

입법의견조사 2001-1

입법의견동향

(2000.11.11 ~ 2001.3.10)

2001. 4.

研究者 : 宋 永 仙(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입법의견 현황	11
헌 정	12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개정의견	
통일 · 외교	13
○ 난민인정절차 정비에 관한 의견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의견	
○ 소방관차우개선에 관한 의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사건의진상조사및피해자의 명예회복에관한 통합특별법(가칭) 제정의견	
국 방	15
○ 사이버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혜택에 관한 의견	
일반행정	15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국가정보원 예산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국가정보원법)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가칭) 제정의견	
○ 전자정부법제정안 관련 입법의견	
내무 · 지방행정	18
○ 경비업법 개정의견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의견	

문화 · 관광 20

- ◎ 고도(古都)보존법(가칭) 제정의견
- ◎ 관광진흥법개정법률안
- ◎ 독립문화 지원정책에 관한 의견
- ◎ 디지털콘텐츠육성법(가칭) 제정의견
-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 ◎ 문화재보호법중 개정법률
-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가칭)안
- ◎ 방송법중 개정법률
- ◎ 소규모 FM방송국 설립 허용에 관한 의견(방송법)
- ◎ 영화진흥법 개정법률안
- ◎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
- ◎ 저작권법 개정안

교육 · 학술 29

- ◎ 교원승진에 관한 의견
- ◎ 국립대 조직축소에 관한 의견
- ◎ 대학 정원 외 입학제도 폐지에 관한 의견
- ◎ 불법체류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허용에 관한 의견
- ◎ 사립학교법 개정의견
- ◎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실시에 관한 의견
- ◎ 청소년보호법 개정의견
-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의견
-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 개정의견
- ◎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견

노동 35

- ◎ 노동위원회 조정 · 심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 ◎ 비정규노동자 대책에 관한 의견
- ◎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에 관한 의견
- ◎ 특수고용직에 관한 의견

재정 · 경제 39

- ◎ 개인과외교습소득 과세에 관한 의견(소득세법)
- ◎ 공인회계사법 개정의견
- ◎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 ◎ 담배사업법 개정의견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문화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의견
- ◎ 부가가치세법 개정의견
- ◎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 서화 · 골동품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의견(소득세법)
- ◎ 세금채납자 자료제공에 관한 의견
- ◎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 예산심의과정 개선에 관한 의견
- ◎ 이자제한법(가칭) 제정의견
- ◎ 장애인 조세감면제도에 관한 의견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개정령안
- ◎ 증권거래법 개정의견
- ◎ 컨테이너세 폐지에 관한 의견

통상 · 산업 48

-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의견
-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 기금법령 정비에 관한 의견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건전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산업발전법)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 ◎ 방문 · 다단계업체 규제관련법 개정에 관한 의견
- ◎ 변액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보험업법)
- ◎ 보험사기 방지책 마련에 관한 의견(보험업법)

- ◎ 보험업법 개정의견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의견
- ◎ 상표법 개정안
- ◎ 상호저축은행법(구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의견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의견
- ◎ 은행법 개정의견
- ◎ 의장법 개정의견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전기·가스분야 안전관리 대행에 관한 의견
- ◎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개정의견
- ◎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
-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가칭) 제정의견

농림·해양 57

-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 농업직접지불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 ◎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 축산법 개정의견

건설·교통 59

- ◎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의견
- ◎ 건축물 리모델링 허용에 관한 의견
- ◎ 교통법규위반신고 보상금제에 관한 의견
- ◎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의견
- ◎ 국유지임대에 관한 의견(도시개발법)
- ◎ 단독주택 재건축조합결성 허용에 관한 의견
-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의견

- ◎ 도로교통법 개정의견
- ◎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의견
- ◎ 도시계획법 및 주차장법 개정의견
- ◎ 도시주거환경정비법(가칭) 제정의견
- ◎ 동파방지 관련법규 개정에 관한 의견
- ◎ 상가임대차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의견
-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의견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의견
- ◎ 자동차관리법 개정의견
- ◎ 제주도 도시개발에 관한 의견
- ◎ 주택건설촉진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개정의견
-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견
- ◎ 지하수법 개정의견
- ◎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가칭) 제정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 69

- ◎ 반사회 사이트 규제에 관한 의견(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 ◎ 인터넷뱅킹관련 법령정비에 관한 의견
- ◎ 전자거래및통신판매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 전자서명법 개정의견

환경 71

- ◎ 공동체소음규제법(가칭) 제정의견
- ◎ 낙동강하구 보호장치 마련에 관한 의견
- ◎ 비행장소음피해보상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령 적용에 관한 의견
-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의견

보건 · 복지 74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에 관한 의견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 생명공학 지원체제 마련에 관한 의견
- ◎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에 관한 의견
- ◎ 아동보호 관련법 개선에 관한 의견
- ◎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 예방접종피해보상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 유전자원 총괄입법에 관한 의견
- ◎ 의료보호법 개정의견
- ◎ 의약담합행위 금지에 관한 의견
- ◎ 인간유전정보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장사(葬事)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변형 포함)의 지정전염병 고시에 관한 의견

법원 · 법무 81

- ◎ 공공기관내 성희롱 방지에 관한 의견
- ◎ 국가보안법 개정의견
- ◎ 국가인권위원회법(가칭) 제정의견
- ◎ 금연건물 지정에 관한 의견(경범죄처벌법)
- ◎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관한 의견(상법)
- ◎ 납세자소송법(가칭) 제정의견
- ◎ 돈세탁방지에 관한 의견
- ◎ 민간고도소설치 ·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가칭) 제정의견
- ◎ 민사소송규칙 · 가사소송규칙 개정안
- ◎ 민사조정법 개정안
- ◎ 법원조직법 개정의견
- ◎ 변호인접견 시 휴대폰 휴대 금지에 관한 의견(행형법)
- ◎ 부동산경매사 도입관련 입법의견

- ◎ 부패방지법(가칭) 제정의견
- ◎ 사법시험법 제정안
- ◎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의견
- ◎ 상법개정안
- ◎ 섭외사법관련 입법의견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 ◎ 즉결심판제도 폐지에 관한 의견
- ◎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
- ◎ 출입국관리법 개정의견
- ◎ 행정소송법 개정의견
- ◎ 회사정리법 개정의견

<참고자료> 101

국회위원회별 법률안 처리현황(2000.11.11 ~ 2001.3. 10)

◎ 입법의견 현황(2000. 11. 11 ~ 2001. 3. 10)

입법의견조사 제2001-1호에서는 2000년 11월 11일부터 2001년 3월 10일까지 넉 달간 각종 언론매체, 학회세미나, 유관단체 토론회, 공청회, 정부부처 및 정당자료 등에 공표되거나 제기된 각계 각층의 입법의견 155건이 접수되었다. 그중 개정의견은 130건, 제정의견은 25건이다. 이하에서는 입법의견을 대한민국헌행법령집의 분류체제를 참조하여 헌정, 통일·외교, 국방, 일반행정 등 16개분야로 나누고, 이를 제정의견과 개정의견으로 재분류하였는 바, 아래의 표와 같다.

최근입법의견현황

분 야	건 수	제정의견	개정의견
◎ 헌 정	3	·	3
◎ 통일·외교	4	1	3
◎ 국 방	1	·	1
◎ 일반행정	4	2	2
◎ 내무·지방행정	3	·	3
◎ 문화·관광	12	3	9
◎ 교육·학술	10	·	10
◎ 노 동	4	·	4
◎ 재정·경제	18	3	15
◎ 통상·산업	22	2	20
◎ 농림·해양	4	1	3
◎ 건설·교통	22	3	19
◎ 과학기술·정보통신	4	1	3
◎ 환 경	5	2	3
◎ 보건·복지	14	2	12
◎ 법원·법무	25	5	20
총 건 수	155	25	130

헌 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

-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192조)에 따르면 당적을 이탈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 바, 올바르게 국회의장직을 수행해도 당적을 유지하면 오해가 생기는 만큼 국회의장 임기 중에 당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여야 함(이만섭 국회의장·민주당 비례대표, 한겨레신문, 2001. 2. 5).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16대 국회의원 가운데 111명이 임기 개시 이틀만에 1명당 440여만원 씩 1개월치의 세비를 전액 수령하여 논란이 빚어진 바, 여야는 국회의원들의 임기초와 임기말 세비를 재직 한 일수만큼만 지급하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천정배 민주당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 송석찬 자민련 수석부총무, 국민일보, 2001. 2. 2; 한겨레신문, 2001. 2. 5).

◎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개정의견

- 교육부는 초·중·고·대학 등 학교에서의 태극기 게양·강하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함.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학교의 국기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등교시간 자율 등으로 학생들이 국기의 게양식과 강하식을 볼 수 없는 바, 국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주장함(경향신문, 대한매일, 2001. 1. 7).

◎ 난민인정절차 정비에 관한 의견

- 정부가 1992년 ‘UN난민지위에관한협정’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에티오피아 반정부 인사인 데구 다다세 데레세씨(26, 에티오피아 반정부단체인 오로모해방전선(OLF)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본국 정부에 의해 수차례 구금, 폭행을 당하는 등 신변의 위협을 겪다 97년 9월 본국을 탈출)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난민문제에 대한 진일보한 시각을 보여주었으나, 법무부가 최근 난민으로 인정한 에티오피아 반정부 인사의 경우와 사정이 거의 비슷한 다른 4명의 신청은 기각함으로써, 정부의 난민지정 원칙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난민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언론에 자세히 보도되도록 한 것은 ‘신원 비공개 원칙’을 무시한 것인 바, 이의 개선이 필요함. 난민행정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회의체인 ‘난민인정협의회’에 고등관무관실의 참가를 허용하여 절차를 투명화시키고, 난민 문제를 불법입국자 처리 차원이 아닌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음(제임스 코바, 유엔난민고등관무관(UANHCR) 일본지역사무소 수석연락관, 한국지역 담당자; 한국일보, 2001. 2. 1; 한국일보, 2001. 2. 28).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의견

- 대북교역에서 민간차원의 일방적 지원은 최악의 경우 실질적인 경제교류의 동기를 남북 경제교류 지원금의 획득에 두는 경우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남북한 경제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 ‘남북협력기금법’은 기금의 용도를 한층 명백하고 효과가 검증된 영역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양하고, 남북경협 또는 경제외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위한 편의제공 등을 중점 지원하도록 개정하여야 함(오승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경향신문, 2001. 2. 23).

◎ 소방관처우개선에 관한 의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2001년 3월 서울 홍제동 화재 사고로 소방관 6명이 순직한 후 정부와 민주당은 일선 소방관들을 위하여 의무소방관제 도입, 방호활동비 10만원 인상, 소방안전장비 강화 등 일련의 처우개선책을 마련하였으나, 현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군인과 경찰직이 교육훈련이나 직무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도 보훈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소방공무원들은 이 규정에서 제외돼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조선일보, 2001. 3. 7).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사건의진상조사및피해자의명예회복에관한통합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 위원회’는 그동안 진행된 제주 4·3특별법 등 개별사건에 대한 입법조치는 전국적 피해지역의 규모를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해당 사건별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학살에 대한 일괄적인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사건의진상조사및피해자의명예회복에관한통합특별법(가칭)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청원 함(조선일보, 2001. 1. 26).

국 방

◎ 사이버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혜택에 관한 의견

- 현재 방송통신대학 재학생에게 재학 중 병역연기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2001년 3월부터 실시되는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병역연기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오점록 병무청장, 국방위원회, 경향신문, 2001. 2. 21).

일반행정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예관법률 개정의견

- 2000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예관법률’은 공적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국민들이 공유하도록 제정된 것으로 개정안에는 당초 입법예고되었던 공공기록물 등록제 시행을 2004년까지 연기한다는 안 외에 국가 주요회의록 작성시 발언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 조항을 발언요지 기록으로 대체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일반 행정부처 공무원에게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는 바, 이는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하는 국가의 정책 결정 사항과 그것을 논의한 회의에 대하여 발언내용 자체를 기록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음. 공공기록물 등록제도의 시행을 3년 연기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요건을 약화시켜 약간의 재교육과정을 거친 일반 공무원에게 까지 자격을 확대한 것은 행정민주주의를 토대로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애초의 개혁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임(참여연대 성명서 2000. 12. 6).

◎ 국가정보원 예산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국가정보원법)

- 안기부예산의 선거자금 불법사건으로 국가정보원의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바, 여야는 각각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임

<민주당>

안기부(국가정보원 전신) 예산의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결과를 토대로 국가정보원 예산의 불법유용 방지 등을 위한 국가정보원 예산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반부처 예비비에 포함시켜 따로 편성하는 2001년 기준, 2천500억원 규모의 이른바 ‘202 예산’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국정원 본예산(2001년 기준, 3천700억원 규모)에 포함시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한나라당>

국가정보원의 ‘안보예비비’에 대한 국회 예결위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폐지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특히 국가정보원의 예산요구를 경상운영비와 정보비 및 비밀활동비로 구분, 산출내역과 근거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하되 정보위와 예결위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며, 감사원이 국가정보원 예산에 관한 회계검사를 매년 실시, 그 결과를 예결위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한겨레신문, 2001. 1. 19).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가칭) 제정의견

- 행정자치부는 2001년 3월 1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국회본회를 통과하여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전자문서로 민원신청 및 고지·통지를 하기 위한 세부시행령 마련에 착수하기로 함. 이에 따라 행정업무 쇄신과 전자화를 통한 종이 문서 감축을 의무화하고, 효율적으로 문서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문서감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한겨레신문, 2001. 3. 1).

◎ 전자정부법제정안 관련 입법의견

- ‘전자정부법’의 핵심은, 단지 기존의 행정 운영의 관행을 전자적 처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적극 공개함으로써 행정 전반의 혁신을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열린 정부로 만들어 가는데

있으나 이러한 원안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여 전자적 공개의 범위와 수준이 크게 제한된 행정자치부안을 원안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①전자정부의 포괄범위를 ‘공공기관’으로 함으로써 입법, 사법을 포함한 국가기관과 자치단체로 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개정안은 이를 ‘행정기관’으로 축소(제2조, 제5조)하였으며, ②전자정부의 ‘공개성’의 측면에서 원안에는 보유 정보공개 원칙에 대해,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전자화된 모든 기록물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특정인의 요구가 없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었으나 행정자치부안에는,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인터넷으로 공개하여야 함.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법률로 보호되는 법인·단체의 비밀 또는 법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조)로 명시하여 행정기관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③원안에는 ‘온라인 인사관리’, ‘온라인 예산관리’, ‘온라인 회계·조달관리’ 등 정부운영의 핵심 사안들에 대한 전자정부화가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안에는 이러한 부분이 모두 삭제되었으며, 기타 ‘원격영상회의’, ‘온라인 원격교육훈련’ 등의 선진적 제도도 모두 삭제함. ④원안에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안에는 이러한 위원회조차도 완전히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전자정부 추진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원안도 변경하여 ‘자치정보화조합’으로 왜소화(제48조)하고 있음. 적어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정부의 전자시스템을 통해 국민과 공유하려는 열린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전자정부의 본 취지를 살리 수 없을 것임(참여연대 성명서, 2000. 12. 21).

◎ 경비업법 개정의견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인천 신국제공항의 개항에 맞추어 공항과 항만, 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맡는 민간경비 용역업체에 대해 ‘특수경비원 제도’를 도입, 총기 휴대 및 사용 권한을 허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이 법안은 행정자치부(경찰청)의 입법요구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 청원경찰이 전문성이 낮고 비용은 높다는 지적과, ‘특수경비원 제도’를 도입하면 예산의 30%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에 따른 것임. 개정안은 국가중요시설 안에서 총기를 관리하면서 인질 및 테러사건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수경비원에게 총기를 지급하도록 하며, 경비원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총기 남용 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총기 소지가 가능한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등 단체 행동권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서는 특수경비원들이 경찰에 준하는 총기사용 근무수칙을 지키고 책임을 질지가 우려되며, 선진국에 비해 총기 범죄가 적은 한국에서 민간경비업체의 무기소지가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주장되고 있음(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 경찰청은 공항 경비를 청원경찰에 맡기는 대신 민간경비업체와 계약 체결한 인천 신공항의 개항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 통상 공포 6개월 뒤부터 발효되는 일반법과 달리 공포를 3개월로 앞당기도록 하고 있음(한겨레신문, 2001. 2. 24; 경향신문, 동아일보, 2001. 2. 5; 조선일보, 2001. 2. 26).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와 공무원 노조 허용은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 합의 사항에 포함된 것이나, 이 법률 시행령의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 설립 금지 조항이 법률은 물론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정신이나 국

제노동기구 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개정안은 제2조에 각 기관단위로 구성된 직장협의회간의 정보교류와 공동활동추진, 단결력 확보를 위해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김락기 한나라당의원 등, 한겨레신문, 2001. 2. 5).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의견

- 행정자치부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2001년부터 금융감독원의 재산등록 대상자가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에서 국장급 이상 전원으로 확대되며, 건축, 건설, 보건위생, 환경분야 공무원과 법무부 마약수사 공무원들은 하급직 직원까지 재산내역의 변동상황을 등록하여야 함. 그러나, 금융감독원 국장급 등 새로 추가된 공직자들은 등록의무가 있을 뿐 재산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조선일보, 2001. 3. 7; 한국일보, 2001. 3. 7).

◎ 고도(古都)보존법(가칭) 제정의견

- 풍납토성 재건축 및 경주경마장 부지에 대한 보존결정이 내려진 후 보상 등에 관련한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호에 대한 보상기준, 근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고도(古都)보존법(가칭)’ 제정을 요구함. 이에 따라서 우선 각 부처간 침해한 시각차를 고려하여 총리실 직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하며, 심의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문화재청장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장, 도시계획 및 문화재 전문가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되고, 총리가 문화재 보존을 위한 모든 예산과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 해당지역이나 도시 전체를 ‘고도보존법(가칭)’으로 묶는 게 아니라 절대보존지구와 상대보존지구로 나누어 유적 밀집지역은 절대보존지구로 지정, 해당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세워주고, 상대보존 지구의 경우 사안에 따라 건물의 신·개축을 허용함(김일운 한나라당 의원, 경향신문, 2001. 3. 10).

◎ 관광진흥법개정법률안

- 내·외국인의 해외관광객이 한해에 900만명을 상회하는 등 국가간 교류인원의 증가와 국민의 국내관광활성화 등으로 관광이 중요여가문화로 정착되고 있음에 따라 건전하고 공정한 관광사업활동을 조성하고, 관광단지의 민간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개발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법개정안을 마련 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건전한 여행문화의 정착과 여행업무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관광사업체의 계약 및 약관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와 관광사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제질서문란행위 및 국가이미지 손상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처벌 조항도 함께 신설함. ②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공

법인에게만 토지수용권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개발자에게도 관광단지내 사유지의 2/3를 매입한 경우에는 잔여토지에 대해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③종전에는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을 포함한 상호의 사용을 금지’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시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 ④유원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의무 고용토록 하고, 안전성 검사에 대한 수수료 납부의무를 명문화함. ⑤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록시 신고·허가의제 대상에 ‘의료법 제31조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및 허가’를 추가함(문화관광부입법예고안, 2000. 11. 17).

◎ 독립문화 지원정책에 관한 의견

- 1999년 클럽공간에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것처럼 독립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법제개편을 해야 할 것임. 먼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창작자들의 실험적 창작을 보장하기 위해서 폐지되어야 하고, ‘공연법’이나 ‘영화진흥법’에 독립문화 개별장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조항들을 설치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함. 현재 독립영화 단체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미디어센터 설치에 관한 법률안도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되고, 법제화되어야 함(민예총일일문화정책 2000. 11. 23).

◎ 디지털컨텐츠육성법(가칭) 제정의견

-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세계적으로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연평균 33% 수준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지만 고품질의 디지털 콘텐츠가 부족하고 디지털 콘텐츠물에 대한 불법복제 등 부정이용 행위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는 등 콘텐츠 유통(Content Syndication) 관련 산업이 낙후되어 산업발전의 중요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콘텐츠 산업 경쟁력이 약한 국내시장이 해외 사업자에게 송두리째 넘어가는 이른바 ‘신정보 식민주의’가 초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 제품의 무단복제 및 부정경쟁 방지,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함(정보통신부·정동영 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2001. 2. 14).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혹은 증축 할시 건축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공미술’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한 법률로써 소위 1% 미술법이라 칭함. 이 법안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권’ 확립이라는 공간의 공공성 확보에 그 제정의 의미가 있으며 그 동안 국내 미술 진흥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비용을 둘러싼 건축주와 작가의 이면 계약, 꺾기 및 리베이트 관행,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등으로 많은 비리를 낳은 법이기도 몇몇 작가들이 제작을 독식하거나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작품을 폐기처리 하듯 설치하여 오히려 환경공해품을 양산하기도 하였음. ①‘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이라는 용어는 공공미술을 건축물의 부수물로 여기에 하고 건축주 개인의 취향에 따라 공공미술 작품이 결정될 수 있다는 소지를 갖고 있으므로 용어를 ‘건축물에 대한 공공조형예술’로 개정함. ②이 법 조항은 ‘환경의 공공성 확보’에 제정의 기본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건축물이 민간건축물 위주로 되어 있어 민간의 반발을 불러 규제개혁 차원에서 1%가 0.75%로 비용이 하향 조정된 바, 적용대상을 이원화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가 되는 공공건축물은 1%로 하고, 민간이 건축주가 될 경우는 현행을 유지함. ③지방자치단체의 문예진흥기금의 ‘공공조형예술’에 관한 별도의 계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의 공공기금화를 유도하고, 관행화된 건축주와 작가의 담합을 차단함. ④현재 광역시도까지만 조성할 수 있는 지방문예진흥기금을 기초자치단체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조형예술’ 기금이 지나치게 광역화되는 것을 방지함(제22조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가 개정된다면 1% 미술법이 구태를 벗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마련되지만 그래도 남는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

정이 있어야 하고, △작품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되어야 하며 △현재 서울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품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특정 작가의 독식과 유사품, 모조품 방지하도록 함(민예총일일문화정책동향 특집기사 2001.1.3).

◎ 문화재보호법중 개정법률

- 지금까지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잠재적 보존 가치가 큰 근대문화유산 등을 보존, 활용하기 위해 ‘등록문화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그 동안 ‘형법’에 따라서 처벌했던 문화재 절취, 은닉자에 대해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에 명시함.

: 문화재청 자료, www.ocp.go.kr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가칭)안

- 규제개혁위원회는 2000년 12월 22일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담당해온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 제도를 유효경쟁체제가 될 수 있도록 법안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심의시 쟁점사항으로 영업의 자율화(등록제)안과 허가제 2년, 3년 안이 제시되었으나, 방송광고시장의 공급제한으로 인한 수요공급의 불균형 등을 감안하여, 2년 존속기한 허가제로 한다고 밝히고, 의결사유로 △개별지분 제한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다수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 △KOBACO의 광고판매를 통한 방송사에 대한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함 △광고판매에 대한 인위적인 공·민영 영역구분은 경쟁취지와 배치 △KOBACO에 의한 공익성 확보보다 방송위원회의 공공성 심의 기능 등 제도적 장치 활용 등을 제시함(민예총일일문화정책동향 2001. 1. 3).

◎ 방송법중 개정법률

- 2000년 2월 구성된 방송위원회의 일부 방송위원들이 ‘방송법’이 보장하는 자격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던 차에 국회상정된 방송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방송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호선의 방식에 의하고 있는 바, 상임위원의 수를 2인에서 3인으로하고,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중 다수의원이 속한 교섭단체 추천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21조). ②방송위원회가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현행법에서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협의’사항으로 함(안 제27조). 현재 방송위원회 위원구성은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추천을 6명으로 하고,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3인을 임명토록 하며, 그 중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호선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다수 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송위원회의 중요한 직무중 하나인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시 문화관광부의 지나친 간섭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바, 방송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의 제고를 위해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방송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할 경우 ‘합의’를 ‘협의’사항으로 개정한다는 것과 다수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개혁적인 방송법이 시행되며 정한 방송전문성과 시청자대표성을 갖춘 인사를 국회로부터 추천 받을 수 있는 면밀한 제도적 장치임(민예총일일문화정책동향기획특집, 2001. 1. 5).

◎ 소규모 FM방송국 설립 허용에 관한 의견(방송법)

- 다양한 방송 서비스 개발·보급해 국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입맛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경기장 등 반경 1~2Km 가량의 한정된 지역에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FM 방송국 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2001년 4월까지 미국과 유럽 등

외국의 미니 FM방송제도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도입방안을 검토한 후에, 방송위원회의 등 관계기관과 설립자격 및 소유제한, 광고방송 허용 여부, 방송구역 설정 및 허가절차, 주파수 지정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임. 미니 FM방송국이 설립되면 일반 청취자들은 상시적으로 또는 특정 시간대에 공원이나 경기장, 대규모 사업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방송서비스가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정보통신부, 내외경제, 2001. 2. 9).

◎ 영화진흥법 개정법률안

- ‘영화진흥법’의 개정배경은 98년, 99년 법 개정과정에서 ‘등급외 전용관’의 도입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된 가운데 창작과 표현의 자유 신장 및 규제완화에 대한 영화계의 요구가 증폭됐고, 한편 시민단체는 음란물 및 폭력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등급분류보류제도의 폐지 및 제한상영관의 도입이 창작과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청소년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대두됨. 그 동안 영화상영관 설치 및 영화상영신고에 관한 사항이 ‘공연법’의 적용을 받는 등 법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국민과 알선기관의 업무처리 및 일관성이 있는 영화진흥정책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해 제한상영관에 관한 설치규정을 신설하면서 영화상영관에 관한 규정을 ‘영화진흥법’으로 일원화하여 정비할 필요 때문임. 영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를 받은 영화관의 양도 또는 합병시 영업정지 승계여부와 관련해 일선기관의 혼선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영화관련 법체계 정비>

- ①영화상영관, 전용상영관, 제한상영관 용어정의 신설과 제한상영관은 시·도지사가 허가한다는 것임. ②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 영화상영신고 등은 ‘공연법’에서 ‘영화진흥법’으로 이관, ③‘공연법’상 공연의 정의에서 ‘영화와 비디오’와 ‘공연신고’등을 삭제. ④‘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돼 영상물등급위원회 설치근거가 ‘공연법’에서 이관될 경우 ‘영화진흥법’관련 규정에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설치근거

를 개정함.

<연령의 적용기준 개선(안 제2조제17호)>

개정안의 내용은 등급분류 및 출입제한 연령을 연도 기준의 ‘연 나이’로 통일하도록 용어의 정의에 연령기준을 신설함.

<등급분류 보류 폐지 및 ‘제한상영가’ 신설(제21조)>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등급분류를 4등급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여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분류보류를 보류 폐지 및 보완규정을 마련함.

<제한상영관 관리 청소년보호 대책>

①제한상영관의 설치허가 및 허가취소에서 허가는 제한상영가 영화만을 상영하는 제한상영관 설치 및 경영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게 하며, 시도지사는 청소년 보호 및 공서양속 유지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 허가 제한을 가능토록 함. 취소는 시도지사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적용함. ②제한상영관 안에서의 게시를 제외하고는 광고 및 선전을 할 수 없도록 함. ③제한상영가 영화 유통을 제한(제29조의 2)한 것은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 또는 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한상영관에서 제한상영가 영화 외에 일반영화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상영하는 것을 금지함.

<기타>

영화의 공급 및 유통에 관한 조항 신설, 영화진흥위원회부위원장 비상임화, 영업의 승계에 관한 규정 신설, 영화진흥금고에서 영화상영관 지원근거 보완.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검열’로 기능하고 있는 ‘등급 보류 폐지’인데, 이는 ‘형법’ 등 다른 법령(음란물의 유통에 따른 형법의 상충문제)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분류를 아니할 수 있다는 안을 포함하고 있어 완전등급

제를 요구하는 영화계의 요구에 반함. 연령의 적용기준 개선에 있어 나이 기준은 실제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 연령과악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비교했을 때 전체 관객수의 약 40만명이 줄어들 수 있는 소지를 남기고 있음.

: 민예총일일문화정책동향 2001. 1. 4.

<등급제도의 개선>

- 영상물등급제의 문제점은 등급심의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검열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 준비중인 등급제를 시행할 경우 등급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보류중인 영상물은 관객을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없고, 이 경우 창작자는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 자진 삭제해야하는 문제점을 갖게 되어 현행 등급제와 다를 바 없게 됨. 따라서 현행 ‘영화진흥법’이나 입법 예정중인 영화진흥법개정안에서 말하는 등급보류에 관한 법안은 완전등급제로 전환·시행되어야 함(민예총일일문화정책동향 기획, 2001. 2. 2).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

- 규제 위주의 현행법률을 산업진흥적 성격의 법률로 전환하고, 규제의 대폭적 완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의 취약성, 국민의 사행심 조장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종전 법규(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 영업중인 게임물의 재등급분류 기한(2001.5)에 따른 게임제공업소의 혼란 예방과 게임산업 전반의 연착륙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18세이용가 게임물의 한정적 유통에 따른 헌법소원 제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법개정함. ①종전에는 등록제로 운영되던 게임제공업을 앞으로는 청소년 게임장업과 일반 게임장업으로 구분하고 청소년 게임장업은 신고업으로, 종전의 게임제공업중 PC방 영업은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으로 변경, 신고업으로 하며 이들 신고업은 2002년부터 자유업으로 전환함(안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26조제2항, 제3항 및 부칙 제2조). ②현재 외국에서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경우 수입 또는 반입추천을

받도록 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다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 또는 반입추천제를 폐지하고 등급분류만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20조제1항). ③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제작업 및 배급업을 등록영업에서 신고영업으로 전환하고, 그 판매업 및 대여업의 등록제를 폐지하여 자유업으로 전환함(안 제26조제1항). ④불건전한 게임물 등 정보제공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음란한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2조제5호). ⑤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영업자는 영업의 양도 또는 회사합병 등에 의해 그 지위를 승계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승계인은 종전의 영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1년간 승계하도록 함(안 제33조)(민예총일일문화정책동향기획특집, 2001. 1. 9).

◎ 저작권법 개정안

- 2000년 8월 31일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위탁관리 되고 있는 저작권에 관한 등록제도에서 등록된 저작권에 한정하여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종전에는 권리자가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던 것을 침해자 스스로가 과실이었음을 입증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도서·음반·영상물·DB·캐릭터·디자인·사진·건축설계도 등 온라인·오프라인상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을 등록할 경우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기가 수월해짐(민예총일일문화정책동향 2001. 2. 26).

◎ 교원승진에 관한 의견

- 교원 승진 평정에서 남자 교사의 임용 전 군 복무 경력이 1백% 인정되고, 여교사들의 육아휴직 기간도 교육 경력에 포함하도록 함. 교육공무원 승진 평정 때 지금까지 교사로 임용된 뒤의 군 복무 경력은 1백%, 임용 전 경력은 88%만 인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임용 전 경력도 1백% 인정하도록 하고, 여교사의 육아휴직 기간은 그동안 교육경력에서 제외됐으나 1년에 한해 보수나 경력 상 재직한 것과 같이 인정하여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이돈희 교육부장관, 김학준, 한국교원총연합회 회장, 중앙일보, 2000. 12. 29).

◎ 국립대 조직축소에 관한 의견

- 교육부는 국립대 발전계획과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그동안 방만한 운영이 지적된 4년제 국립대, 산업대, 전문대 등 국립대 본부 조직과 단과대학 행정실 조직을 최고 31%까지 축소하기로 하고, ‘국립학교설치령’, ‘서울대학교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조직축소 계획에 따르면 4년제 국립대, 산업대, 방송대, 교대, 전문대 등 40개 대학의 본부 과는 기존의 427개에서 340개로 20.4%가 줄어들게 됨(한겨레신문, 2001. 1. 26).

◎ 대학 정원 외 입학제도 폐지에 관한 의견

- 지난 1997년부터 적용된 ‘고등교육법시행령’은 대학이 정원 외로 뽑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자격 기준에 따라 2년 이상 외국에 근무한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의 동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일반전형, 12년간 외국수학자 전형 등으로 나누고 있으나 부칙에서 이런 기준들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02학년도 입시부터는 기준이

자동 소멸됨. 교육부는 5년 전부터 대학 자율이 예정된 사항인 만큼 예정대로 2002학년도 입시부터는 대학들이 자체기준을 세워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되, 최근의 부정입학 사태를 감안하여 대학들이 합리적으로 자체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임(세계일보, 2001. 1. 7).

◎ 불법체류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허용에 관한 의견

- 교육인적자원부는 법무부와 논란을 빚어온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2001년 3월부터 만 7~12세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자녀는 거주지구청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근 초등학교에 제출하면 국내 초등학교에 입학해 수료 후 정식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국내에서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은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2002년부터는 중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게 됨. 이번 조치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체류자 자녀 1만103명중 미국, 일본, 유럽, 대만 출신 등을 제외한 478명(추정)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됨(송영섭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장, 한국일보, 조선일보, 2001. 2. 7; 한겨레신문, 2001. 2. 8).

◎ 사립학교법 개정의견

- 민주당이 학교법인 비리 임원의 법인이사회 복귀를 제한하고 교원 임면권을 이사회에서 교장(총장)으로 돌리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민주당 입장>

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산인데도 일부 사립학교 설립자들이 개인 재산처럼 생각하고 건물공사 리베이트 수수, 교원 채용시 금품 수수 등 솔한 비리를 행하고 있어 매년 사회문제가 되어온 바,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교원 임면권은 원래 교장이 갖고 있었으나 1990년 로비에 의해 법인이사회로 넘어가도록 개정됐던 것인 만큼 원상회복 하여야 함. 이와 함께 법개정이 학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의욕

을 약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사회의 상임이사에게만 급여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일반 이사에게도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마련중임(설훈 민주당 의원).

<한나라당 입장>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전체 사학의 10%도 안 되는 일부 비리 사학을 견제하기 위해 사학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재산권조차 제한하여, 대학교육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등 우리 교육의 주요 기반을 이루는 사학의 기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바, 사학비리를 막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임시조치법을 마련할 예정임(이경재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교육계 반응>

◇ 찬성론

3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측은 민주당의 개정법안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지만 법 개정의 초점이 되어야 할 ‘공익이사제도’ 전면 도입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하면서, 재단이사장과 학교장이 친인척 관계인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교원 임면권을 교장에게 준다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도움이 안되므로 공익이사제도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주장함(이금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 사무처장).

◇ 반대론

극소수 비리 사학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립학교를 한 틀 안에 가두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면 사학의 존립 이유가 없으며, 교육부 장관 바뀌듯 교육관련법이 바뀌는 것은 우리 교육의 희망을 없애는 것임(이의영 경희초등학교 교장·한국 사립초등학교회 회장,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2001. 2. 13).

- 학교법인 이사의 절반을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충당하도록 하고, 이사 가운데 이사장의 친인척 허용 비율을

현재의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축소하는 한편, 비리로 처벌받은 당사자는 10년 동안은 복직을 금지하도록 함(김원웅 한나라당 의원등, 한겨레신문, 2001. 2. 22).

-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마련함. 이와 함께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를 대학 공식기구로 두며, 현재 자문기구인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강화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기로 함. 개정안은 현재 이사회가 의결하고 있는 교원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돌려주고,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를 배제하며, 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학교장이 임면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감사중 1명은 초, 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의 경우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전문가를 임명하고, 비리·분규의 당사자로서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이사로 복귀하기 위한 경과기간을 현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되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당국의 승인을 반드시 얻도록 제한하고 있음(국회교육위원회 소속의원들, 문화일보, 한겨레신문, 2001. 2. 8).

◎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실시에 관한 의견

- 중학교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의무교육권이 시행되도록 일반시, 광역시, 특별시 지역의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004학년도에는 3학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함. ‘교육기본법’ 제 8조에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1년 상반기내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마칠 방침임(이돈희 교육부장관. 경향신문, 국민일보, 매일경제, 한겨레신문, 2001. 1. 18).

◎ 청소년보호법 개정의견

- 1997년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애초부터 청소년과 무관한 음란물 유통을 통제하고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이 정작 보호해야 할 청소년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이 유해매체에 대한 규제법으로만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인권·교육권·문화권을 신장시키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시키고 ‘청소년진흥법(가칭)’으로 대체 입법하고자 함(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민예총일일문화정책동향 2000. 11. 14).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의견

- 정부는 2001년 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장기간의 질병으로 취학의무를 면제받은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교장으로부터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체가 비평준화 지역에 설립한 사립고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모집정원의 20% 범위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음(조선일보, 2001. 2. 26).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2학기부터 교원 계약제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기간제 교사제도를 다양화하여, 전일제뿐만 아니라 격일제, 반일제, 시간제 교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오는 2001년 5월까지 개정하여 6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함. 이는 7차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선택과목수가 늘어나고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교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를 시행하게 되면 기간제 교사수가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음. 격일제·반일제·시간제로 임용되는 기간제 교사도 현재의 전일제, 기간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정규교사와 동등한 신분을 보장할 방침이며, 특히 계약기간 내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면직할 수 없도록 하고, 정규교사와 똑같은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방학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할 방침이며, 보수는, 전일제는 정규교원과 같고, 격일제와 반일제는

정규교사의 절반, 시간제는 주당 표준수업 시수를 기준으로 실제 강의 시간에 따라 산정하기로 하였음. 현재 계약제 교원은 기간제 교원(1만 1210명), 산학겸임교원(470명), 강사(496명), 명예교사(496명) 등 1만2000여명으로 기간제 교원은 주로 1년단위로 계약하고 있음(조선일보, 경향신문, 2001. 3. 9; 국민일보, 내외경제, 2001. 3. 10).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 개정의견

- 서울시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징수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기로 함. 이에 따르면 앞으로 300가구 이상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용 택지의 경우는 분양가의 1.5%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을 내야 함. 부담금은 시, 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 각 50%씩 들어가 공립 초, 중, 고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로 쓰이게 될 예정임(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외경제, 2001. 2. 10).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국회 법사위는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의 교습이 3번째 적발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하는 등 미신고 과외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함. 주요내용은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개인과의 교습자는 교습내용을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겨 적발될 경우 1차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처분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하다 다시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3차로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금고형에 처해지게 되며, △현직 교사는 과외를 하다 1회만 적발돼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개인과의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명문화하며, △교습자는 과외교습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부모 등이 요구할 때 제출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한국일보, 2001. 3. 7; 경향신문, 2001. 3. 8).

노 동

◎ 노동위원회 조정·심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 현행 조정전치주의에서는 조정이 반려될 경우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으며, 필수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나 공익사업 및 그 규모가 큰 일반사업에까지 허용된 긴급조정제도는 노조의 단체행동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폐지돼야 마땅한 바, 노동위원회의 조정전치주의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위원회 조정·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법개정을 청원함(한국노총,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2001. 2. 5).

◎ 비정규노동자 대책에 관한 의견

- 비정규노동의 엄격한 제한과 기본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4대보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으나 지금까지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이와 함께 △비정규노동자 균등대우 △시간제근로 엄격제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 △단시간 노동자보호 △비정규노동자 사회보험 완전적용 등 에 관련한 법제도 개선안을 제출하도록 정부에 주장함(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 한겨레신문, 2001. 2. 15).

◎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에 관한 의견

- 노동부는 전체 실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일용근로자가 사회 안전망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함. 일용근로자는 취업이 불규칙하고 이직이 잦아 보험료 징수와 근로경력 증명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오다가 지난 1999년 10월부터 고용기간 1개월 이상 근로자에 한하여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왔으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3년부터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일감이 없을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게 될 전

망임. 한국노동연구원이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중시하여 하청업체도 보험료 납부 주체로 하고, △피보험자 신고를 1개월 단위로 통합하여 이를 간소화하며,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주가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여 사업장이 없어지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근로경력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음.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신청일 이전 한달간 근무일이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매일(일반근로자는 2주에 한번) 노동관서에 출석해 실업상태임을 확인 받도록 하고 있으며, △2주에 6일 이상 근무한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6일 미만이면 근무일수 만큼 실업급여를 감액 지급할 방침이며,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겨울철마다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번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18개월간 재신청을 금지하기로 하였음(경향신문, 2001. 3. 6).

◎ 특수고용직에 관한 의견

- 특수고용직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고용관계로 사실상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형태를 취하지 않고, 대신 노동자로 하여금 강제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여 도급위탁 등으로 노동력을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 모집인, 지입 차주 겸 운전기사, 학원강사 등으로 종사자는 1백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노동계에서는 특수고용직도 명백한 노동자이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계에서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 보호는 노동법이 아니라 민법과 상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노동법 개정 찬성의견>

현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제외되어 일반노동자들의 권리인 임금과 제반 근로조건,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과 모성보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관리 아래 그들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 형식으로 독립사업자로 치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노동자로 보아야 함. 구체적인 근거로 ① 사용자가 업무내용과 수행방식 결정한다는 점, ② 각종 규정을 통해 출결과 업무수행여부에 따라 계약해지와 징계 등이 내려진다는 점, ③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점, ④ 명백하게 근무시간과 장소가 결정되어 있다는 점, ⑤ 겸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⑥ 업무의 제3자 대행이 어려운 점 등을 들수 있는 바, 이는 이용·종속관계가 분명한 노동자임. 최근 보험모집인에 대한 노조설립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전국건설운송노조로 설립신고를 마쳤으나 사용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시설관리, 사내하청 등 파견과 용역형태의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는 즉시 원청회사(건물주)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여 노동자들을 내쫓고 있으나, 이 경우 법적 책임을 지는 용역업체는 경제력과 실질적 지배력이 없는 바, 이의 개선이 절실함.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 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당연히 노동자로 규정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 있는 자도 사용자로 규정하여야 하고,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조항의 개정을 통해 도급계약해지 등은 불법행위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허영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노동법 개정 반대의견>

특수고용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근로자이어야 하지만 판례는 명백히 보험모집인과 학습지교사 등은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노동계는 이들의 사회적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성 판단기준인 사용종속성 여부를 대신해서 경제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제적 종속성

으로 판단하자면 자동차공장 하청업체의 사장도 원청업체의 근로자가 되고, 심한 경우 재산상태가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어, 독립 자영업자의 상당부분을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바, 경제적 종속성을 이유로 한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고, 더구나 사회적보호 필요성은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법에만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보호제도에서처럼 전체 시장 참가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요청되는 원칙에 불과함. 더불어 특수고용직을 소위 유사근로자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토록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소위 유사근로자는 자영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님.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될 것인 바, ①형평성 문제: 현재 정규직 근로자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현행법상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정규직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 적용받고 있음. ②입법목적과의 불합치 문제: 소위 유사근로자에게 적용하자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해고보호, 임금규정은 근로계약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이와 관련한 핵심규정을 소위 유사근로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의 보호를 예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는 행위임. 근로자에 유사한 자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독일에서조차도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규정은 해고보호, 임금 등이 아니라 성희롱, 휴가 등 협소한 범위에 국한되어 있음. ③실업문제: 보다 많은 특수고용직을 인위적으로 근로자로 편입시킨다면, 사회보험료 등 인건비상승을 우려하는 사업자가 사업방식을 인력수요가 덜 필요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에 특수고용직 당사자나 취업을 희망하는 노동시장 외부의 실업자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적어질 수 밖에 없음. 때문에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적보호는 노동법이 아니라, 권리남용금지원칙에 의해 법원이 특수고용직의 계약내용을 통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계약조건 보호 등과 같이 ‘민법’과 ‘상법’ 또는 경제관계법의 개정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올바름(김영배 경제인총연합회 상무, 경향신문, 2001. 2. 22).

◎ 개인과외교습소득 과세에 관한 의견(소득세법)

- 국세청은 사교육의 대표적 형태인 과외교습의 개인소득에 대하여 2001년 7월1일부터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함. 2001년 3월 8일 국회본회의에서 ‘과외 신고제’ 도입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과외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르면 과외로 돈을 번 개인은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 제작비와 차량운영비 등 연간 총 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2002년 5월 소득세 신고 시 2001년 7월부터 올린 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회계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표준 소득률로는 연 수입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40%, 4,000만원 초과 시 56%의 소득률로 각각 적용함. 또한, 과외를 교습한 사람이 4인 가족의 가장일 경우 인적공제로 400만원, 표준공제로 60만원 등 모두 46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주부나 미혼자가 과외교육으로 소득을 올릴 경우 인적공제로 100만원, 표준공제로 60만원 등 모두 16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음. 이와 함께 과외로 올린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과세할 방침임(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2001. 3. 7; 동아일보, 문화일보, 2001. 3. 8; 한상률 국세청 소득세 과장, 한국일보, 2001. 3. 9; 내외경제, 한겨레, 2001. 3. 9; 국민일보, 2001. 3. 10).

◎ 공인회계사법 개정의견

- 회계법인의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회계법인의 최저 자본금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함(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경향신문, 2001. 2. 23).

◎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 재벌의 변칙증여를 통한 부의 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체계에 의하면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무리해서 과세하는 경우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고율의 이자를 얹어 돌려주고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하며, 심지어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행정부 내에서 사법기능을 가진 국세심판원 또는 감사원을 통한 부과취소처분이 내려지는 등, 현행 세법규정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 변칙상속, 증여를 막을 수 없어 조세정의를 담보할 수 없는 바, 열거주의 방식의 현행 개인 과세제도를 법인 과세와 같은 포괄주의 방식으로 조속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앞서 세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이전에라도 대주주의 주식매매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변칙적인 거래로 증가된 지분을 일정기간 보유하면 증여세나 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제규정을 정비하여야 함(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한국일보, 2001. 2. 12).

◎ 담배사업법 개정의견

- 담배제조 독점권 폐지를 통하여 담배제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마련됨. 이 법안은 △담배제조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자본금, 시설기준, 기술인력, 담배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갖추도록 하고, △이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엽연초 경작농가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공익부담금 등으로 4천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경작농가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음.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법’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와 광고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토록 한 정부 개정안을 수정, 이들 문구를 삭제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수정 의결의 부대조건으로 엽연초 관련기금이 엽연초조합의 인건비 대신 경작농가에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엽연초조합의 구조조정을 2001년 말까지 20% 이상 단행토록 하였으며, 담배인삼공사의 경영권을 외국인 등 특정인이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동일인 지분한도는 현행 7%를 유지토록 하고, 외국인 총지분 소유한도도 계속 억제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함(한겨레신문, 경향신

문, 2001. 2. 26;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내외경제, 한겨레신문, 한국경제, 2001, 2.13).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신문, 방송, 의료, 제약 등 6개 업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정책 차원의 종합대책을 세워 지배적인 기업이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신규기업을 인수해 미래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함. 6개 업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제도개선 사항은 다른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을 개정하거나 관련 고시, 지침을 제정하여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로 함(이남기 공정거래위 위원장,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2001. 2. 16).
- 한 주유소에서 2개 이상 정유사의 제품을 표시, 판매할 수 있는 주유소 복수표사인제(상표표시제) 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단수 표사인제를 규정하고 있는 '주유소등석유판매업의공급자표시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복수표사인제(상표표시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산업자원부>

자유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유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단일 상표표시제를 선진국처럼 사적계약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한 바, 상표표시에 관한 공정위 고시는 폐지하고 다른 법률에서 상표표시 규정과 처벌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2001. 2. 13).

◎ 문화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의견

- 문화예술작품의 구매 또는 관람시 지불된 자금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하여 입체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검토, 즉 문화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요구되나, 문제는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이 소득세 면세자이고

또 문화생활비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이 중산층 이상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것임. 이는 역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문화생활비의 개념이 아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확장시킬 방안을 마련해 동시에 시행할 것이 요구됨.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소득에 상관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등의 문화예술 참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민예총일일문화정책동향기획기사, 2001. 3. 2).

◎ 부가가치세법 개정의견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가 2001년 6월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국제적 규범(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 바, 우리나라도 이에 근거하여 2001년 하반기에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고, 이르면 2002년부터 해외에서 영화, 음악 등 무형의 재화나 서비스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국내에 유입(다운로드)되어 판매될 경우, 소비자 과세 원칙과 개정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예정임(한정기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 심의관, 내외경제, 2001. 2. 8).

◎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징수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부담금을 신설하려면 기획예산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모든 부처는 관할 부담금의 부과·사용내역을 담은 운용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부담금의 종류를 한정열거방식으로 정해 신·증설을 억제하고, 부담금심의위가 신설, 증설, 변경, 폐지, 요율 등에 관해 심사하도록 했으며, 기존 부담금의 부과실태와 사용내역의 건전성·공공성 등을 평가하여 부적절한 부담금의 폐지를 해당부처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기획예산처, 한겨레신문, 2001. 1. 29).
- 준조세 성격인 각종 부담금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부과, 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정의·범위를 한정 열거방식으로 전환하고, 징수, 사용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며, 법에 의하지 않는 부담금의 신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함. 이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부담금과 관련한 1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부담금정비법(가칭)’을 제정하고,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로 함.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개발부담금을 폐지하고, 문예진흥기금(영화관 등 입장료의 2~6.5%), 국제교류기여금(신규 여권발급시 1만5000원),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면허소지자 월 50원, 자가용 소지자 월 400원), 교통안전분담금(자동차정기검사시 5000원, 출고차량당 4800원), 진폐사업자부담금,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등도 함께 폐지하기로 함(민주당, 국민일보, 2001. 3. 1).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그동안 지적재산권 침해나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피해업체가 요청할 경우 1년 이내에 조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했던 바,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출입상품에 대해서는 최종 판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무역위원회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즉각 통관, 유통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불공정무역에 대한 잠정조치’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여 시행하기로 함(중앙일보, 2000. 11. 16).

◎ 서화·골동품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의견(소득세법)

- 미술시장의 불황을 조금이나마 타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미술품의 관심갖기나 조세감면 혜택 등 많은 문화진흥과 활성화 방안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금융권에서의 미술품 담보대출 시행임. 금융권이나 제2금융권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산업에서 미술품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는 제도를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한다면 미술시장의 활성화는 당장 효과적일 것임. 이는 미술품을 현재 비업무용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업무용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와 더불어 기업의 자산평가나 손실금처리를 미술품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여 현실화해 준다면, 스포츠인이나 연예

인의 스폰서 역할을 하는 기업인들도 미술작가나 문화단체의 후원자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미술품의 전반적인 경제적 가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임(고해우 한국사회문화연구소장, 민예총 일일문화정책동향 2000. 12. 22).

◎ 세금체납자 자료제공에 관한 의견

- 국세청은 지난 2000년말 ‘국세징수법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발맞추어 일정액 이상의 고액체납 또는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신용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용사회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4월부터 금융기관에 납세자의 체납자료를 제공할 대상자를 체납액 1천만원 이상에서 500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확대하기로 함. 이처럼 체납액을 조정한 것은 500만~1천만원 체납자는 자료제공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체납액이 결손 처리되면 금융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해야하는 모순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대상자는 8만800명(2000년 12월말 기준)에서 13만2천300명으로 63.7%나 증가하게 됨. 현재 금융기관 세금체납자료 제공 대상자를 체납액 1천만원 이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으로 지정하고 있음. 국세청은 전국 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게 되고, 다른 신용 정보업자는 은행연합회로부터 이를 제공받게 되며, 명단이 통보되면 금융기관에서 주의거래처로 등록되어 신규대출 중단 및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의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고, 증권, 신용거래 계좌개설이나 보험가입요건이 강화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박용만 국세청 징세과장, 경향신문, 2001. 2. 26).

◎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결합정보보고의무제’ 등이 포함된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으로 리콜제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임. 결합정보보고의무제는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일정기간이내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존 법률이 정부의 강제적 리콜명령만 규정하고 있었던데 반하여 개정안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리콜명령이전에 리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리콜권고제와 긴급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상적인 리콜절차 없이 리콜을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긴급리콜명령제도 포함함(재정경제부, 국민일보, 2001. 3. 5).

◎ 예산심의과정 개선에 관한 의견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이 ‘밀실’에서 담합해 지역구 민원을 챙기거나 선심 예산을 늘려온 관행에 따른 폐해가 큰 바, 국회 예결특위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예산항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함. 현재 ‘국회법’ 84조에는 예결특위가 소관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내용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상임위 의견을 실제로 존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결위가 ‘삭감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세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상수 한나라당의원, 한겨레신문, 2001. 2. 5).

◎ 이자제한법(가칭) 제정의견

- 1998년 이자제한법이 철폐된 후 신용카드신용대출이자는 연 30% 사채이자는 연 300%를 넘나드는 등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나 법원은 고리대와 관련한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민의 피해를 방관하고 있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바, 고리대를 남발하는 금융기관과 사채업자들을 견제할 최소한의 처벌장치가 필요하고, 고리대에 의한 피해자들이 법에 호소해도 100% 패소하는 상황인 만큼 적정수준으로 이자를 제한하는 법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음(송태경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신성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한국일보, 2001. 2. 13).

◎ 장애인 조세감면제도에 관한 의견

- 국세청은 120여만명에 달하는 장애인과 상이자 6만6,000여명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2월말부터 ‘증여세와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를 확대시행하기로 함. 개선안은 2001년 2월말 출시되는 장애인전용보험상품에 맞추어 장애인이 지급 받는 보험금 중 연간 4,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장애인 조세감면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장애인전용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 시에 기타 보험료 공제와는 별도로 연간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단,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들에 한함(한국일보, 조선일보, 2001. 2. 19).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개정령안

- 지금까지 정부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술행사를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이루어 졌으나 정부예산의 한계와 일회성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직접지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입체적인 간접지원이 요구되어 온 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정동극장,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이 법인세를 감면받게 됨(민예총일일 문화정책동향 논평 2001. 2. 19).

◎ 증권거래법 개정의견

-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를 뽑을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의결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이들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였으며, 주식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위하여 심의, 의결권을 갖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증권거래소에 설치토록 하였음(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경향신문, 2001. 2. 23).

◎ 컨테이너세 폐지에 관한 의견

- 컨테이너세를 의왕ICD(INLAND CONTAINER DEPOT) 등 내륙화물기지에도 적용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되자 한국무역협회는 이에 반발하며 현재 부산시에서만 적용되는 컨테이너세 자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함. 1992년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지역개발세 명목으로 도입된 컨테이너세는 부산시가 컨테이너 화물차량 등을 위한 우회도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재원마련이 어려워 재원조달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부산시도 2001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임. 컨테이너세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목적세이고, 도로이용자의 일부인 컨테이너 하주로부터 건설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컨테이너세 확대는 당초 제도 도입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바, 부산시도 징수목표를 달성한 만큼 이번 기회에 수출업체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함(한국무역협회, 경향신문, 2001. 2. 21).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의견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파산절차의 특례) 및 부칙 제3조(파산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규정)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소지가 있음. ①‘파산법’상 파산관재인 선임은 법원의 재판사항임에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와 부칙 제3조는 법원의 파산관재인 부적격자 심사권한을 박탈하고 있는 바, 이는 법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파산관재인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권력분립을 정한 헌법정신에 반해 법원의 재판권 내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고, ②파산관재인은 파산자, 파산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떠나 중립적·독립적 입장에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다른 채권자와 이해가 상충될 때 중립적인 관재업무 처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움. 예보만을 파산관재인으로 임명하는 것은 예보가 소액채권자임에도 보다 많은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를 배제하게끔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됨(서울지법 파산2부, 2000. 12. 29 ; 법률신문 2001. 1. 11).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건설교통부는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치고 국민주택기금운용 계획도 바꿀 방침임. 이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2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쉽게 살 수 있도록,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이 임대사업자에게 보증해 주는 한도(현행 6000만원)를 높이고, 용자대출 이자도 연 7%에서 5%로 내리도록 규정될 예정임(동아일보, 2001. 1. 27).

◎ 기금법령 정비에 관한 의견

- 정부가 증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41개 기금법령을 2001년 내에 정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전체 60개 기금 가운데 현재 주식투자에 제한을 받고 있는 31개 공공기금과 10개 기타기금 등 41개 기금법령을 고쳐 주식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19개 소관 정부부처에 요청함. 이를 위하여 재정경제부는 △법률과 시행령에 자산운용 방법의 하나로 주식투자가 명문화되어있지 않은 ‘군인복지기금법(군인복지기금)’과 ‘방위산업육성기금에 관한특별법(방위산업육성기금)’ 등에는 주식투자 조항을 넣도록 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축산법(축산발전기금)’과 ‘산업발전법(산업기반기금)’ 등은 주식투자를 포함한 자산운용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기타 유가증권 및 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운용방식을 막연히 규정하여 해석과 재량에 따라 주식투자 허용 여부가 엇갈릴 수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공공자금관리기금)’과 ‘원자력법(원자력연구개발기금)’도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개정하기로 함. 이 개정은 특별법을 제정해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부처가 자체 개정 수요에 따라 고칠 때 ‘주식투자 가능’ 조항을 넣도록 유도될 방침임(내외경제, 한겨레신문, 2001. 3. 8; 경향신문, 2001. 3. 10).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건전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 (산업발전법)

- 산업자원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들이 부실기업의 경영권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서도 계약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 등 특정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되는 비용도 CRC의 기업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자본금 의무사용 비율(10%)에 포함되는 등 관련 투자요건을 완화하며, 개인투자자에 국한되던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법인투자자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건전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01년 상반기 중 ‘산업발전법’ 등을 임시국회에 상정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임. 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CRC

가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고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수행하는 계약형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핵심업무로 인정해주기로 하고, ②금융기관에 한해 허용됐던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을 CRC에도 허용, 이들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권 취득을 돕도록 하였으며, ③그밖에 CRC의 수익기반 확보와 일시적 자산운용에 유연성을 부여해 금융기관 예치 등 일정범위 내에서 미투자자산의 운용도 허용하기로 함. CRC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되 이들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CRC등록 및 사후관리 요건을 크게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신설 CRC의 납입자본금을 30억 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창업투자신탁사 및 자산관리회사 처럼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 하였으며, △법규위반시 영업정지 처분 및 업무개선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취소에 국한되었던 제재요건을 크게 강화하였고, △특히 투자자보호를 위해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실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임(전자신문, 2001. 2. 27).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 산업자원부는 국가적 현안사업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함. 이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원자력발전소 등을 자율적으로 유치하는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건설비의 1.5%에서 2%로 상향조정하도록 했고, 지금까지는 한국전력이 유치지역에 대한 장기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음(한겨레신문, 2001. 2. 25).

◎ 방문·다단계업체 규제관련법 개정에 관한 의견

- 방문·다단계 업체에 대해 소비자 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습적 기만업체의 퇴출을 촉진하며, 할부거래 청약기간 연장과 청약 철회예외 품목의 축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개정을 검토중임(이남기 공정위원회 위원장, 내외경제, 2001. 2. 16).

◎ 변액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보험업법)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품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여 얻어지는 수익의 크기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보험금을 달리하는, 대표적 선진형 실적배당상품인 변액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중임. 변액보험이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당해연도의 위험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를 뺀 부분)를 일반자산과 분리된 펀드로 구성해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한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보험금이 변동하는 보험상품으로, 펀드 운용에서 기존 정액형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차액만큼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펀드 운용에서 손실이 나면 현행 상품보다 손해를 볼 수 있는 제도를 말함. 변액보험제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지급여력비율 기준에 묶여 기관투자가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보험업계가 주식이나 채권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경향신문, 2001. 1. 30).

◎ 보험사기 방지책 마련에 관한 의견(보험업법)

- 금융감독원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크고 작은 보험사기가 계속되어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는 바,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험사기 조사권을 확보할 방침을 세우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우선 금융감독원은 재경부와 협의하여 보험사기 혐의자와 피해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보험업법’에 마련하고, 보험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미국의 ‘보험사기방지모델법’ 처럼 보험사기행위 금지가 규정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할 방침임(유관우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경향신문, 2001. 2. 8).

◎ 보험업법 개정의견

- 현대, 삼성, LG, 한진, SK 등의 5대 재벌은 2003년 3월말까지 보험사업자의 주주가 될 수 없고, 부실 보험사업자를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사업자 주주가 될 수 있고, 이때에도 2개 이상의 부실 보험사를 인수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업법’ 조항은 5대 재벌의 보험업 신규 진출을 막아 독점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 부실 보험사 정리를 진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5대 재벌 가운데 삼성 등 4개 재벌은 이미 보험업에 진출해 있고, 한진은 보험업 진출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함(재정경제부, 내외경제, 2001. 3. 8).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유명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하는 것을 골자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전자신문, 2001. 1. 31).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의견

- 산업자원부 장관이 부품·소재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기반 조성을 주도하고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의결됨(전자신문, 2001. 1. 31).

◎ 상표법 개정안

- 2001년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잘 알려진 지역 이름으로 만들어진 상표가 등록 출원 전부터 사용되어 식별력이 있을 경우,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개정안’을 의결한 바, 이에 따르면 외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하거나 등록을 한 자가 우리나라에서 해당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정해 국제출원을 할 경우, 우리나라 상표등록 출원이 국제 등록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전자신문, 2001. 1. 31).

◎ 상호저축은행법(구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의견

-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금고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지배구조가 우량한 금고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호저축은행법(구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하고자 함. 총자산 규모에 따라 금고에 대한 감독을 차등화하여, 지배구조 우량 금고에 영업점 신설을 허가하고, 신상품 판매시 다른 금고에 일정 기간 시차를 두어 시장선점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임(금융감독원, 내외경제, 2001. 2. 28).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신용평가업이 추가되어, 2001년 하반기부터 신용평가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영업 중인 신용평가회사들도 허가를 신청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함. 지금까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사업만이 규정되어 있었고,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왔음(내외경제, 2001. 2. 18).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의견

-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자유화와 관련하여 세계개편 등 LPG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사업허가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LPG충전사업허가업무를 현행 시, 도지사로부터 시, 군, 구로 넘기도록 하고, 불량제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하여 충전사업자에 대해 가스제품의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하며, LPG 정량거래 정착을 위하여 가스충전용기 외부에 충전량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산업자원부, 경향신문, 2001. 2. 2).

◎ 은행법 개정의견

- 재정경제부는 현재의 ‘은행법’은 내국인 소유한도를 4%로 제한하여 외국인(10%)과 역차별 논란을 빚어왔고, 책임경영을 위한 주인 찾아주기와 정부 지분 매각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바, 내국인의 은행 소유한도를 지금의 4%에서 10%로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중임. 재정경제부에서 마련중인 법개정안은 정부 소유은행의 조기 민영화 계획에 발맞추기 위하여 2001년 안으로 그 시행이 앞당겨질 예정임. 소유한도 상향조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가져오고 부실 자회사에 대한 무리한 대출, 경쟁기업 대출제한, 은행 보유정보의 부당한 이용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반대의 여론도 제기되고 있음(윤용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한겨레신문, 2001. 3. 7).

◎ 의장법 개정의견

- 현행 ‘의장법’에서는 의장권이 있는 등록의장과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을 정당한 권리 없이 실시하는 경우에만 침해가 인정되어, 등록의장의 일부를 도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면 의장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부분의장제도를 도입하여 컵의 손잡이, 병의 입구, 양말 뒤축 등 현행 ‘의장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물품의 일부분에 대한 독창적인 창작도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여 향후 의장권 분쟁사례를 줄이고, 부분의장에 대한 창작활동을 활성화하여 디자인업계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함(특허청, 내외경제, 2001. 2. 2).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품질면에서 일반제품과 다를 바 없는 재활용품이 인식부족으로 소비자에게 기피되고 있는 바, 재활용산업 기반형성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제품의 구매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재활용촉진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전재희 한나라당 의원, 매일경제, 2001. 1. 4).

◎ 전기·가스분야 안전관리 대행에 관한 의견

- 규제개혁위원회는 첨단건물이 늘고 건물관리가 전문화됨에 따라 5층 이상 건물 소유주가 외부 전문업체에 건물관리를 위탁할 경우 전기, 가스 분야 안전관리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위탁업체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산업자원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함.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을 할 경우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출자증권을 의무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폐지하기로 함(내외경제, 2001. 2. 8).

◎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개정의견

- 재정경제부는 인수·합병(M&A전용펀드·사모뮤추얼펀드)이 단기 주가차익만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M&A를 시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M&A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각을 금지하고, 채권시가평가제 도입으로 금리변동 위험이 높아진 투신사에 금리 스왑(SWAP)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함(전자신문, 2001. 2. 1).

◎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

- 인터넷 등에 공개된 기술정보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특허나 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이 개정의결 됨(전자신문, 2001. 1. 31).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공산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의 ‘품질경영촉진법’을 개정해 해당제품의 교환·환불·수리를 명할 수 있는 리콜제도를 도입하고, 공산품 안전검사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가칭)’을 마련한 바, ①안전검사 대상공산품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언론매체를 통해 위해사실을 공표하고, 당해 제품을 리콜할 수 있도록 하며, ②안

전검사 대상공산품을 안전검사 대상품목과 기타 안전검사품목(안전검정 품목)으로 구분하여, 안전검사 대상품목은 지정검사기관에서 출고 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③선진국의 경우 민간인정기관을 통해 ISO9000 인증제도를 지정, 운영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민간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이 국제기준에 따른 품질경영체제(ISO9000) 인증을 맡도록 함(전자신문, 2001. 1. 4).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농어민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일을 연장하고 1조1,000억원 규모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등 9건의 법률안을 공포한 바, 이에 따르면 농어민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을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되며, 또 2001년 1조1,000억원의 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을 농어업인에게 지원하고, 농어민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호금융자금 10조원에 대해서는 5년간 연리 6.5%의 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됨(한국일보, 한겨레신문, 2001. 1. 3).

◎ 농업직접지불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 경상남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방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을 돕고, 친환경적인 영농확산을 위해 농민들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논농업 직접지불제도’가 2001년 처음 시행되었으나 초기단계부터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바, 보조금지급 면적 상한선과 지급단가 등을 조정해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함. 경상남도는 도내 취약농가를 중심으로 시·군당 10개 농가씩, 모두 220개 농가를 선정하여 논농업 직접지불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르면, 보조금지급 상한면적이 2ha로 되어 있어 많은 농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이 여러 필지로 나누어 중복신청을 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지급금액도 ha당 25만원(농업진흥지역)과 20만원(농업진흥지역 밖)으로는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개선할 방안이 필요한 바, ‘논농업 직접지불제도’의 상한면적을 5ha로 상향조정하고, 금액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수준인 ha당 52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구분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와 함께 ‘농지법’이 발효된 지난 1996년 이후 취득농지를 임대차한 경우, 법상 규정된 농

지치분명령이 두려워 임차인들에게 직접지불제 보조금 신청을 못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소유농지 일부가 처분명령 대상이면 그 부분만 신청할 수 없도록 하되, 나머지 농지는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지적함(한겨레신문, 2001. 2. 28).

◎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신물질이나 신품종을 개발할 때에는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국제 현실 속에서 국내 식물유전자원의 확보와 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바, 산림청은 식물유전자원의 보전, 증식과 산업화를 촉진하고 국내 식물 유전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하여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여 2001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함. 이 법률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도 수목원 조성 가능 △수목원 등록제 도입으로 사립수목원 등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수목 유전자원의 해외 유출입 신고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한겨레신문, 2001. 3. 2).

◎ 축산법 개정의견

- 농림부는 광우병 파동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씻기 위하여 음식물찌꺼기로 만든 사료를 소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바, 소에게 음식물 사료를 먹이지 못하게 하고 식물성 사료만 먹이도록 하는 방향의 ‘축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음식물 사료로 사육된 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전량 구매해서 격리 처리할 방침임(한갑수 농림부장관, 국민일보, 2001. 2. 9).

건설 · 교통

◎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의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제13조1항 및 별표1 제3호의 단서조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함.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내의 대지에 대해서는 건물의 신·증축을 허용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인데, 단서조항에 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종전의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바, 이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건설교통부, 경향신문, 2001. 1. 17).

◎ 건축물 리모델링 허용에 관한 의견

- 건설교통부는 엘리베이터나 주차시설, 노약자·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설치 등 건축물의 기능이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면적과 높이 증가가 불가피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또한 용도변경에 따른 추가 주차수요 증가량이 50% 이내일 경우 주차장 추가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오수처리 시설과 정화조 설치기준도 완화해야 하며, 주거환경정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건축규제를 완화해 리모델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법무부 개최, 2001. 2. 22; 한겨레신문, 2001. 2. 23).

◎ 교통법규위반신고 보상금제에 관한 의견

- 경찰청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법규위반신고보상금제’를 2001년 3월 10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함. 이 제도의 도입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교통사고처리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이 제도의 신고대상은 사진으로 법규위반 여부를 객

관적으로 판명할 수 있는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통행 등이며, 차량의 법규위반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신고자는 건당 3,000원씩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적발된 피신고 차량이나 운전자에게는 6만~7만원의 범칙금, 또는 7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신고는 법규위반차량 발견 15일 이내에 위반현장 관할경찰서에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동영상이나 비디오 테이프는 제외됨(국민일보, 2001. 3. 5;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2001. 3. 6; 한국일보, 2001. 3. 7).

◎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의견

- 무분별한 교통조사와 중복적인 교통투자를 막기 위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여 건설교통부가 교통조사의 방법·기준 등을 표준화한 교통조사지침을 만들고,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국가교통조서를 공표하면 공공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이와 함께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이 평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내 최초로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도입, 개량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고통기술로 지정해 지원할 방침임(건설교통부, 국민일보, 2001. 1. 31).

◎ 국유지임대에 관한 의견(도시개발법)

-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 5년 이상 영업하고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법인이 지방의 국유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 국유지를 20년간 임대해주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함. 대상 국유지는 보전지역이 아닌 자연녹지 또는 준농림지, 준도시지역 등이며, 10만평 이상 규모의 토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기업에 토지개발권한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국유지는 민간에 비해 임대료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건설교통부,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외경제, 2001. 3. 9).

◎ 단독주택 재건축조합결성 허용에 관한 의견

- 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도 조합결성을 통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2001년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임. 이 법안은 주변 경관을 침해하는 아파트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구청이나 시청 단위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만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단독주택은 아파트 재건축에 필요한 경우에만 공동으로 재건축하거나 건설업자가 주택을 구입, 재건축하도록 하고, 조합을 통한 재건축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경향신문, 2001. 2. 28, 2001. 1. 25; 조선일보, 2001. 1. 29).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의견

- 서울을 비롯한 5개 대도시권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변도로와 전철사업에 사용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대도시권 주변의 난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다소 완화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함. 이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 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 대지조성, 아파트지구 조성, 주택건설, 주택 재개발, 도시개발 등의 사업에 부과됨. 구체적 부과대상 지역은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지만 대도시와 주변에 새롭게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소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도시계획구역 내 사업도 50%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함. 부담금은 국고에 40%, 지방자치단체에 60%가 귀속되며, 국고분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광역교통시설 계정에, 지방자치단체분은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들어가 도로와 광역전철, 환승주차장 등 광역권 교통시설 건설 및 개선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됨(국민일보, 2001. 2. 1).

◎ 도로교통법 개정의견

-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높은 ‘킵보드’나 ‘인라인 스케이트(일명, 롤라브레이크드)’를 타는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같은 놀이기구를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탈 때에는 보호장

구를 착용하는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놀이기구 및 보호장구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함(건설교통부, 동아일보, 2001. 1. 16).

- 우리나라 전체범죄의 37.7%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보다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더 효과적으로 운전자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띠 미착용 같은 것은 단속보다는 홍보·계도로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형사제재를 포기하고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함. 10대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교통질서위반행위는 범죄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행정질서 위반행위로 전환, 과태료 등 행정제재만을 부과해야 하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경우 벌금 및 행정제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형사처벌보다 범죄예방에 효과적임. 재산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인 경우 원상회복이 이뤄진다면 형사제재를 부과할 필요가 없으며 행정제재 또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해야 하고, 2주 이하의 인명피해를 유발한 교통범죄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형사제재를 하지 말아야 하며 3주 이상 혹은 사망하는 등의 경우 현행과 같이 징역 및 벌금을 부과해야 함. 교통범죄의 증가는 우리 사회와 형사사법체계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는 바, 교통범죄에 대한 제재는 행정제재가 형사제재에 비해 선행되어야 하고 자유형보다는 벌금형을 우선 적용해야 함(기광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교통관련 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2001. 2. 5).

◎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의견

- 정부는 2001년 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갓길을 운행하는 행위도 카메라로 촬영해, 이를 근거로 승용차와 4t 미만 트럭은 9만원, 버스 및 승합차와 4t 이상 트럭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지금까지 카메라 단속은 주·정차 위반, 승용차 등의 버스 전용차로 통행, 속도 위반 등에 대해서만 실시되어 왔고,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 갓길운행은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됐을 때만 범칙금을 부과해

왔음(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2001. 2. 26).

- 경찰청은 신체장애 등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면허시험을 다시 치르지 않고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함(한국일보, 2001. 3. 7).

◎ 도시계획법 및 주차장법 개정의견

- 건설교통부는 2001년 3월 홍제동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소방관 참사가 일어난 원인을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단 주차행위로 보고 2001년 내에 ‘도시계획법’과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주차장 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1999년을 기준으로 주차장시설은 670만대이며 이는 자동차등록대수인 1천116만대에 비할 때 부족하며 도심 등 비주거지역의 주차장을 제외할 경우에는 주차장 부족이 더욱 심각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현행 ‘주차장법’상 시설면적 120㎡당 1대씩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0.7가구당 1대로 의무화하기로 하였고, 기존 주택밀집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차수요 대 공급비율을 60-70%로 맞출 수 있게 주차장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민간자본의 유치도 허용할 방침임(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외경제, 동아일보, 2001. 3. 9).

◎ 도시주거환경정비법(가칭) 제정의견

- 재건축·재개발 조합 집행부의 운영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중도금 납부 등을 명문화한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여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건설관리(CM) 부문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조합 집행부의 비리 소지를 줄일 방침이며, 특히 조합 집행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해 조합원 공람을 하지 않았거나,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 조합원과 관련된 계약을 부실하게 맺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건설교통부, 경향신문, 2001. 2. 19).

◎ 동파방지 관련법규 개정에 관한 의견

- 서울시는 상위법령에 위임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999년 7월 폐지된 ‘동파방지관련건축조례’를 다시 제정하여 새로 짓는 주택의 수도계량기에 열선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주택건축업자 등에게 동파 예방조치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상위법령에 두는 쪽으로 건축물 관련 법규를 개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임(경향신문, 동아일보, 2001. 1. 29).

◎ 상가임대차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부동산업자 및 건물주의 횡포에 전국 400만 명의 임차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상가임대차보호법(가칭)’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보고, 영세상인들의 보증금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가칭)안’을 입법청원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전국상인대회를 개최함(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공동대표 권영길), 한겨레신문 2001. 2. 15).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의견

-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민간 제조업체는 수도권과 지방에 50%씩 분산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은 85% 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설득할 명분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법률이 아닌 정부 방침으로 결정, 추진되어 왔으나 여전히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연차적인 지방 이전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연차적 이전계획을 강제적으로 수립해야 민간부문의 이전 촉진 등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기로 함. 개정안에는 중앙정부 청사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주도적으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산하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은 기획예산처나 총리실 등이 협의하여 이전계획을 별도로 마련함을 내용으로 함(건설교통부, 경향신문, 동아일보, 대한매일, 2001. 2. 11; 국민일보, 2001. 2. 12).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의견

- 건설교통부는 2000년 12월부터 2002년까지 서울에 관광호텔이 포함된 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객실 면적에 대해선 과밀부담금을 면제받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함. 개정 법령에 따르면 연면적의 10% 이상을 객실로 사용하는 신축 건물의 경우 과밀부담금 산정 때 객실 면적은 제외하게 됨(중앙일보, 2000. 11. 16).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의견

-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등 8개 대형 유통업체로 구성된 ‘셔틀버스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00년 12월에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시행되는 셔틀버스 운행 금지 조치는 헌법에 규정된 직업수행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고, 또 병원, 호텔, 학원 등 다른 업종의 셔틀버스 운행은 허용하면서 백화점과 할인점의 셔틀버스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권 위배인 바, 이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함(한국일보, 한겨레신문, 2001. 2. 26).

◎ 자동차관리법 개정의견

- 2003년부터는 자동차제조회사들이 자기인증을 통하여 자동차를 제작, 판매하도록 하며, 과징금 도입 등 리콜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자기인증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자기인증제도란 정부가 자동차 제작 및 판매 전에 관련 기준, 법규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승인하는 현행 형식승인제와 달리 제조사가 자율적인 시험을 통해 적합여부를 확인하되 리콜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3~7개월을 기다렸던 제작사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제조결함이 발생하더라도 리콜조치 외에 별다른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었던 것과는 달리, 제조회사들의 무분별한 출고 경쟁을 막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리콜을 소홀히 하거나 안전기준

을 위반할 경우 제작사에 리콜대상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과징금으로 부여하는 등 벌칙을 강화할 방침임(윤경한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자기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제도 전환방안 공청회』 건설교통부 주최, 2001. 3. 9; 국민일보, 2001. 3. 9).

◎ 제주도 도시개발에 관한 의견

- 제주도가 지방자치단체도 토지구획정리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게 현행 ‘도시개발법’을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종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의해 환지방식의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이 폐지되고 2000년 7월 ‘도시개발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지구 전체를 환지하는 방식으로의 도시 개발은 불가능하고 토지 소유주들로 구성된 조합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주도의 경우,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환지 방식 도시개발을 선호하는 바, ‘도시개발법’ 개정이 필요함. 지자체도 전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절차 간소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 규정 마련 등을 건의함(제주도, 내외경제, 2001. 1. 30).

◎ 주택건설촉진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개정의견

- 재개발·재건축 대상이 아닌 수직채의 단독주택도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개정에 반영하고자 함. 지금까지 집단 불량주거지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으로, 낡은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10가구 이상의 소형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1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도 주택조합을 결성한 뒤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되며,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은 230~250%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방침임(경향신문, 2001. 1. 25; 동아일보, 2001. 1. 26).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견

- 건설교통부는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시중금리보다 지나치게 높은 월 1.5~2%의 이자율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함. 이를 위해 2001년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차인, 임대인 대표 및 각계 전문가로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대차 계약의 이의신청 등을 처리하는 기능을 맡길 예정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 재계약 때 기존 계약보다 5% 이상 못 올리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월세 전환 때도 적용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하였고, 집주인에게는 적정 임대료를 지키면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중앙일보, 2000. 12. 27).
- 주택임대료의 인상을 억제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형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함. 금리가 6%대로 하락하고, 임대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계약갱신시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속출하며, 전·월세금 인상으로 인한 다툼도 빈발하고 있는 바, 법개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함. 각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료분쟁을 조정하는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나친 임대료 인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물가상승률과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정 임대료 수준을 명시하는 권장 임대료제도를 시행할 예정임(물가대책장관회의, 2001. 1. 31; 경향신문, 2001. 2. 19).

◎ 지하수법 개정의견

- 환경부는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정화명령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1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2001년 11월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개정 지하수법에 따르면 △주유소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등 지하수오염 유발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자는 오염방지시설과 지하수 오염여부를 주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수질관측정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특히 지하수 수질측정 결과 수질이 환경부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오염을 유발한 시설 관리자 등은 빠른 시일 안에 오염정화계획을 세워 오염된 지하수를 직접 정화해야 하며, △오염방지시설과 수질관측정을 설치하

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기로 하고, △ 지하수 오염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방치 폐공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원상복구하도록 함(한겨레신문, 2001. 2. 26).

◎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건설교통부는 2002년에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의 건설과 관리업무 부문을 통폐합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고, 2003년에는 ‘한국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의 여객 및 화물운송 등 운영사업을 하는 내용의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가칭)’을 입법예고함. 기본법안과 정부계획에 따르면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은 2003년까지 해체되고, 새로 구성되는 한국철도주식회사의 경우 정부가 전액 출자 하여 설립하되 2007~8년 흑자로 전환하는 때에 맞추어 주식시장에 상장해 장기적으로는 민영화하도록 함. 동해선(포항-속초), 호남고속철도, 진주-김천선 등 신설 노선의 경우 철도노선 관리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해 수익성을 높이고, 경춘선과 수도권전철 등 기존 노선 일부도 민간기업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철도청 부채 1조5000억원, 고속철도공단 부채 6조8000억원 등 총 8조3000억에 이르는 철도부채 처리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5조9000억원을 떠 앉고 나머지 차량구입 부채 등 2조4000억원은 한국철도주식회사에 넘길 예정이며, 철도운영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서 군인할인요금, 적자노선 운영, 학생·장애인 할인요금 적용 등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철도운영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해 보전해줄 방침임(한겨레신문, 2001. 2. 26).

◎ 반사회 사이트 규제에 관한 의견(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 검찰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자살·폭탄·음란·도박 사이트 등 각종 반사회적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함. 현재 이들 반사회적 인터넷 사이트가 촉탁살인 등 형법상의 범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 외에는 형사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고, 청소년이 접속하거나 선동적인 내용으로 범죄의 촉발요인이 될 경우 사이트 운영자를 제재할 처벌규정 마련이 시급한 바,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정진섭)는 이들 반사회적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임(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2001. 2. 8).

◎ 인터넷뱅킹관련 법령정비에 관한 의견

- 최근인터넷과 보안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뱅킹에 대한 체계적 감독법규를 정비하지 않을 경우, 전자매체에 의한 대량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전체금융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바,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함. 인터넷뱅킹에 대해 체계적인 감독법규가 정비되지 않을 경우, 은행과 비금융기관 모두 동시다발적인 대량전자정보가 유입됨으로써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고, 이 경우 불과 몇 시간만에 은행이 파산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임. 인터넷뱅킹이나 전자화폐라는 것이 발전도상중에 있는 개념이므로 관련자의 구체적 권리·의무 혹은 어떤 소비자보호원칙이 적용될 지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 사례가 전문한 상태이고 명확한 원칙도 수립되지 않아 법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김용재 국민대법대교수, ‘인터넷뱅킹의 법적 규제’, 한국정보법학회, 2000. 11. 21; 법률신문 2000. 11. 27).

◎ 전자거래및통신판매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분쟁해결과 소비자 구제기구에 의한 조정근거 등을 둔 ‘전자거래및통신판매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할 예정임. ‘전자거래및통신판매에관한법률’에는 조건 없는 청약철회권의 보장과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할 방침임(이남기 공정위원회 위원장, 내외경제, 2001. 2. 16).

◎ 전자서명법 개정의견

-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서명모델법’ 제정과 미국의 ‘전자서명법’ 통과 등 외국의 입법동향을 수용하여 국가 간 전자서명 상호인정에 대비하고, 국내 ‘전자서명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개정안에는 △전자서명의 정의를 확대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사례와 기술중립성 등을 대폭 반영하고, △전자서명 인증서를 이용하는 기관이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사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별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내 ‘민법’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외국의 손해배상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이해 당사자의 의무와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고, △‘전자서명법’과 동일한 개념의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다른 법률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임. △특히 전자서명 개념을 확대할 경우 어떤 자격을 갖춘 전자서명에 대하여 현재와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작업을 하고, △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의 법적 효력, 전자문서의 원본성, 법적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하며,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을 ‘전자서명법’에서 상세히 규정하여 다른 법에서 정하는 본인 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함. 이와 함께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를 모두 포괄해 국가 전반의 통합된 공개키 기반구조(PKI) 구축을 위하여 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기본정책을 결정하는 범국가적 운영위원회 설치도 추진하기로 함(고광섭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장, 내외경제, 2001. 2. 26).

환 경

◎ 공동체소음규제법(가칭) 제정의견

-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심장순환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소음(원치 않는 소리 (unwanted sound))을 규제하고 아파트 등 생활공동체에서 조용히 살 권리를 찾는 주민들이 모여 결성된 ‘아파트 주거문화개선 시민운동본부’는 아파트 내 과도한 소음을 없애기 위하여 ‘공동체소음규제법(가칭)’의 입법청원을 결의함. 우리 ‘민법’은 제217조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음이 피해자의 수인한도를 넘을 때 피해자는 방해제거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소음의 한계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고 현행 ‘소음·진동규제법’도 공장 소음, 생활 소음, 교통 소음 및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으나, 아파트 소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관련법제의 개선이 요구됨(김명용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조선일보, 2001. 2. 13, 2001. 2. 26; 경향신문, 2001. 3. 10).

◎ 낙동강하구 보호장치 마련에 관한 의견

- 부산시는 사구가 내륙과 해안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고, 폭풍이나 해일로부터 해안선과 농작물 등을 보호하며, 해안가 식수원인 지하수 저장하고, 염생식물의 서식지와 철새 등 조류의 산란장소를 제공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으나 사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어 갖가지 개발사업과 골재 채취 등으로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있으며, 사구의 생태변화 실태와 형성 메카니즘 등의 연구 조사가 미흡하고,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과 관리지침, 관련 법규와 제도가 없어 방치되고 있다고 보고, 낙동강 하구의 모래언덕과 해변가의 해안사구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한겨레신문, 2001. 1. 5).

◎ 비행장소음피해보상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비행장 부근에 사는 주민과 학생 100만명이 수십년 동안 겪고 있는 소음문제에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호소하기 위하여 대구, 포항, 예천, 상주, 수원, 광주, 충주 등 비행장을 끼고 있는 9개 지역주민 300여명은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주민연대’를 결성하고 비행장 소음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함. 대구시 동구 방촌동의 경우, 근처 케이투 비행장에서 하루에 50여차례 전투기가 뜨는 바, 그때마다 20~30초 동안 귀를 찢는 굉음이 발생해 생활을 방해하고 학교 수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그 대책마련이 시급함(최종탁,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주민연대 대구·경북지역 상임대표, 대구대 산업기계공학부 겸임교수, 한겨레신문, 2001. 2. 27).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령 적용에 관한 의견

- 환경부는 2001년 2월 2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에서 시행규칙 등이 정비됨에 따라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 단계까지 자연자원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량,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계량화한 뒤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의 신청을 받아 환경부 지정 인증기관이 인증하게 되어 있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제품의 환경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나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지고 제품 수출과정의 비관세 장벽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국제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대상제품은 TV 외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청소기, 반도체, 모니터 등 12개며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방침임(국민일보, 2001. 2. 2; 전자신문, 2001. 2. 3).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의견

- 최근 2년동안 허가된 산림지역의 채석, 토사채취사업 1천107건 중 사업면적이 5만㎡ 이상인 곳은 110건(9.9%)에 불과하여 대부분 사업장

이 사전 환경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산림지역의 환경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산림지역내 채석, 토사채취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면적을 기존 5만m²에서 3만m²로 낮추는 방향으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함. 동시에 향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공사중지 조치를 취하는 등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임(환경부, 경향신문, 2001. 1.19; 국민일보, 2001. 1. 20).

보건·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에 관한 의견

- 2000년 10월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지급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 이에 따르면, 생계급여 지급 재산 기준이 현재 △1~2인 가구 2,900만원 △3~4인 가구 3,200만원 △5인 이상가구 3,600만원에서 각각 200만원이 올라감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총재산 액이 3,400만원 이하이고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인 월 96만원 미만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주소지가 없는 비닐하우스촌 거주자에 대해선 별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기초생활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이 생겨 급여대상에서 탈락할 경우라도 의료비와 교육비는 정부 예산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적 이유로 퇴직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발적 이직자'들도 실업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장기구직자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자영업을 시작할 경우에도 '취업장려 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한편 초음파 및 MRI 검사, 언어치료 등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만성신부전증, 소아혈액암, 재생불량성 빈혈, 중증 골다공증 등 특수질환의 치료제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임(사회 안전망 점검 관련 민관 대책회의, 한국일보, 2001. 1. 10).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대검찰청 강력부는 산부인과 또는 응급실 환자의 강력 진통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염산 날부핀'이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 대용 약물로 남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이 약품이 에메스암페타민 (속칭 히로빵) 등의 마약류보다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큰 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염산날부핀'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2001년 3월부터

날부편 밀매, 소지, 투약 등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하기로 함. 검찰은 날부편이 투약 사범은 물론 대가성 없는 날부편 수수, 매매, 알선, 소지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며, 위반자는 5년 이하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2001. 1. 31).

◎ 생명공학 지원체제 마련에 관한 의견

- 포스트 게놈시대를 맞아 생명공학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함.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신개념의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유전자치료제허가및임상시험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생명공학제품특성에맞는기준및시험방법심사에관한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생명공학제품 가운데 에이즈치료제나 연골조직치료제, 신경세포치료제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회복불능 질병치료제에 대한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자료 일부를 시판허가가 난 뒤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을 개편하여 생명공학제품 전담 부서를 의약품안전국과 평가부, 독성연구소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며, 연구지원팀을 구성하고 후견인제도와 상시 상담제를 실시하여 생명공학제품의 개발단계에서 제품화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함(양규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01 Bio-tech 발전 정책토론회』 식품의약품안전청 개최, 2001. 2. 21).

◎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에 관한 의견

- 건설교통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2001년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2002년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를 분양주택의 경우, 9%에서 7%로, 임대주택은 5.5%에서 4%로 내리기로 하고,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포괄적인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며, 건설임대사업자의 사업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건설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수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해 세입자를 보호하기로 함(조선일보, 2001. 2. 26).

◎ 아동보호 관련법 개선에 관한 의견

- 서울시내 영, 유아교육시설의 15% 정도가 3층 이상의 고층이나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서울시내 5천여개 영·유아시설중 약 11%는 3층 이상의 위치에 있고 보육시설의 약3%, 유치원의 약5%는 지하에 위치해 있고, 이에 따라 고층건물에 위치한 영유아교육시설의 경우, 화재 등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특히 우발적 사고가 빈번한 아동시설은 추락 사고의 위험가능성이 높으며, 지하시설은 상대적으로 면역기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 적용 받는 ‘영유아교육법’에는 지하시설이나 2층 이상의 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 안전시설에 대한 지침이 없고 유치원관련법령에는 시설 규정조차도 없는 바, 1999년 씨랜드 화재 참사처럼 우리사회가 117만 아동에게 ‘위험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 보호 관련 법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이순형 서울대 아동가족학 교수, ‘영·유아시설의 위치실태와 문제점’; 윤선화 (사)한국안전생활교육회 부장, 『아동환경진단 정책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최, 2001. 2. 13; 한겨레신문, 2001. 2.13; 경향신문, 2001. 2. 21).

◎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처방전을 2부 발행토록 돼 있는 현행 ‘약사법시행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담합 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바, 명시적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이를 강력히 단속키로 함. 현행 ‘약사법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환자 보관용과 조제용으로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방전을 발급치 않을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약국 조제용 처방전 1장만 발행한 의사를 처벌하면 적법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는

바, 이를 개정하기로 하고, 시행규칙이 정비될 때까지는 먼저 시, 도를 통한 행정지도를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곳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임(보건복지부, 한겨레신문, 2001. 2.14).

◎ 예방접종피해보상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예방접종 과정에서 빈발하고 있는 영유아 의료사고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에관한법률’안은 홍역 디프테리아 파상풍 등으로 영유아와 아동들이 예방접종을 받는 과정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피해보상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분쟁이 잦았던 점을 감안, 정부 및 백신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과 장애, 사망시 진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등, 국민일보, 2001. 2. 15).

◎ 유전자원 총괄입법에 관한 의견

-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부처가 과학기술부와 환경부·농림부·해양수산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도 부처별로 세분화해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어렵고, 또 유전자원의 해외 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체제가 전혀 없는 데다,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도 부족하여,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 입법제도 도입이 시급함. 특히 유전자원을 이용한 등록특허가 2000년 11월 현재 2327건으로 지난 1997년 이후 매년 300건 이상 급증하는 등 유전자원을 활용한 생명공학 관련 특허 등록이 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확보된 유전자원에 대한 총괄적인 DB센터나 네트워크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인 바, 생물 다양성 관리 기구를 구축, 유전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한 후 유용 유전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보존 및 확보·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유전자원을 특허화하고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 육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허청은 유전자원 관련 총괄 입법 추진을 검토하기로 함(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원센터, 『유

전자원 현황 조사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사업』보고서, 전자신문, 2001. 3. 5).

◎ 의료보호법 개정의견

- 각급 병원, 의원에서 보험료 청구 및 지급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 등으로 생활보호 대상인 의료보호환자들의 진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의료보호법’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만성적 진료비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급기간을 최장 3년에서 최단 1개월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준비되기 전이라도 중앙교부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대표와 소비자대표,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의료보호 심의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여, △당 위원회가 의료보호 자금과 제도를 심의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의료보호 2종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추어 오는 200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한겨레신문 2001. 3. 7).

◎ 의약담합행위 금지에 관한 의견

- 의약분업 시행 이후 가족 관계인 의사와 약사의 담합행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법률상 담합유형으로 명시하여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사와 약사가 직계존비속(며느리 포함) 관계이고, 의료기관 처방전의 75% 이상이 약국으로 집중될 경우 해당 의사와 약사를 담합행위로 처벌하는 방안을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임. 이와 함께 약사법개정안에 담합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 내 시설일부를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국시설의 일부를 바꿔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도 담합행위로 처벌할 방침이며,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 중에서 75% 이상이 특정 약국으로 집중될 경우에는 이를 일종의 담합행위로 간주하여 보험급여를 줄여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임(보건복지부, 경향신문, 2001. 2. 15).

◎ 인간유전정보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보건복지부가 대검찰청, 한국복지재단, (주)바이오그랜드와 함께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미아 찾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인간유전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 인간 유전정보는 개인의 고유정보이기 때문에 노출되면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고용에서 차별을 불러와 인권침해를 낳을 소지가 있는 바, 인간 유전정보 이용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검토 및 허용 한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함 (한재각 시민과학센터 간사, 한겨레신문, 2001. 2. 19).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현행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뇌사판정기관(의료기관)의 의뢰로 뇌사판정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뇌사판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뇌사판정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뇌사’를 합법화 하는 내용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시행된 2000년 2월9일 이후 뇌사자는 70% 가까이 준 반면에 장기이식 대기자는 2.5배 이상 늘어나는 등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장기를 받는 수혜자가 관리비를 대부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는 장기이식이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을 받는 등, 뇌사자 장기이식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개정 시안을 마련하여 입법추진하기로 함. 개정시안에 따르면 뇌사의 판정을 뇌사자 담당의사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등, 장기이식과 관련한 뇌사(腦死)판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또 정부예산으로 ‘장기이식 관리기금(가칭)’을 설치하여 지정 의료기관을 통하여 장기기증자의 신체 검사비, 적출비, 기증 후 건강검진비 등 뇌사판정에서 이식에 이르는 각종 관리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뇌사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반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위축된 뇌사자 장기이식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종교단체 등에서는 “의사에게만 뇌사판정을 맡길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

을 제기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됨(경향신문, 2001. 2. 9; 한국경제, 2001. 2.10; 한국일보, 2001. 2. 11).

◎ 장사(葬事)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장례식장 영업기준 시간을 현행 자정 또는 새벽 5시(업소 자율결정)에서 정오로 변경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장례식장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장사(葬事)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기로 함(한나라당, 국민일보, 2001. 2. 15).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변형 포함)의 지정전염병 고시에 관한 의견

-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을 통한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일명 인간광우병)’ 전염여부가 아직 의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미국은 이미 1999년부터 1980~1996년의 기간동안에 6개월 이상 영국 체류 경험자의 헌혈을 받지 않고 있는 바, 혈액을 통한 VCJD전염을 막기 위하여 1980~1996년의 기간동안에 영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내국인의 헌혈을 불허하기로 함. 보건복지부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변형 포함)을 지정전염병으로 고시, 발병감시와 역학조사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함(한국일보, 2001. 2. 19).

법원 · 법무

◎ 공공기관내 성희롱 방지에 관한 의견

- 여성부는 공직사회의 성희롱 추방을 위하여 성희롱 피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보호조항을 마련하고, 신고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관 실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성희롱방지추진계획’을 마련함. 이 안에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조항을 넣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신고자한테 인사문제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음(한겨레신문, 경향신문, 2001. 2. 20).

◎ 국가보안법 개정의견

- ‘국가보안법’은 그 동안 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여 왔고,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음. 법이 제정된 1948년 당시는 냉전과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던 시점이었던 반면에 50여년이 흐른 지금의 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존치하여서는 발전적인 남북관계 형성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마땅함. 그중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은 핵심적인 독소조항인 바, ①위 법의 구성 형식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될 뿐 아니라, ②국제연합 인권위원회 이사회에서 폐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조항이며(제7조3항, 5항), ③현재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조항이 유지될 경우 개정의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④개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면(제7조 5항이 폐지되어), 단체의 행위를 따로 처벌한다는 것은 법 논리상 문제가 있음(3대 개혁입법처리촉구시민사회단체 성명서, 2001. 1. 9).
- 현행 국가보안법 중 정부참칭(제2조) 및 불고지죄(제10조)를 삭제하고 찬양고무죄(제7조)의 구성요건 강화를 내용으로 법 개정하고, 특히 제7조에 규정된 찬양고무죄와 관련, 목적범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함. 형량은 3년이하로 했으며 제6항과 제7항의 미수범 처벌 및 찬양고무. 반국가단체 구성 예비음모 처벌조항은 삭제했고, 제19조 구속기간 연장 조항도 수사권 남용을 우려해 없앴고, 제21조 포상 조항의 경우 1항 통보 또는 체포자에 대한 상금지급은 존치시키되 제2항과 제3항의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 종사자에 대한 포상규정은 실적주의 폐해 등을 막기 위하여 삭제함(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한겨레신문, 2001. 2. 22).

◎ 국가인권위원회법(가칭) 제정의견

- 인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는 ①인권위원회는 정무직 공무원인 6명 이상의 상임위원과 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②인권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퇴직 후 2년간 공직취임 및 공직선거 출마를 금지함. ③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권위원회의 규칙에 위임하되, 대통령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하게 하여 법무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④직원의 채용, 인사, 징계 및 면직은 물론 조직과 운영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내부 조직과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함. ⑤국가기관의 조사거부는 ‘안전보장, 통일, 외교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로 제한하고, 수사, 행형 및 재판에 관한 자료에 대한 조사거부권을 인정해서는 안됨. ⑥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권한을 가져야 하며, 위증과 허위진술, 증거의 날조와 인멸행위를 형사처벌해야 함. ⑦허위진정죄에 대한 수사는 인권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해야 하고, ⑧구금시설 직원이 피수용자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조사나 면담에 참여하거나 진정서를 열람할 수 없게 해야 함. ⑨인권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가기관이 사전에 인권위원회와 협의하게 하고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해야 함. ⑩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정부보고서를 심사하는 국제기구에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함(3대 개혁입법처리촉구시민사회

단체 성명서, 2001. 1. 9).

- 법무부가 지난 98년 9월 인권위를 민간기구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사위의 심의중 제15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됨.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구성하는 인권법안을 다시 마련, 법무부와 당정협의 3회, 실무자협의 5회 등을 거쳐 올 1월 인권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그 명칭을 ‘국가인권위원회법(가칭)’으로 하는 법안을 다시 입안해 법무부와 4차례의 당정협의 끝에 이날 최종 합의함.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①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립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2명 이내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되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②인권위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님. 인권위의 조사 대상인 인권침해행위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헌법상 평등권 및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며 차별행위는 ‘고용과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및 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인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임. ③인권위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되, 공소시효 및 민사상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년 이전의 사건도 조사가 가능토록 함. ④수사·재판·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되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 중인 독직폭행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만 조사가 가능하도록 교통 정리됨. ⑤조사는 당사자에 대한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사실조회, 장소·시설·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등을 할 수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중지·사과·손해배상·화해의 권고 및 시정권고, 피진정인 고발, 징계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를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도 있도록 함. ⑥이밖에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조사 및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무부 인권법

안, 법률신문 2001. 2. 19).

<동성애자 차별금지>

정부와 민주당, 한나라당이 각각 준비중인 인권관련법에는 동성연애자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사회·경제적 차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첨부될 예정이다.

◇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가칭)’ 제31조(위원회의 조사 대상)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성애 또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나라당

인권법안 제2조(정의)에서 동성애 등과 같은 성적 성향에 따른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명문화하고 있음.

◇ 법무부

준비중인 법안의 위원회의 조사대상 관련 조항에서 동성애 등과 같은 성적 성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 및 이들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한 첫 입법 조치임(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2001. 1. 31).

◎ 금연건물 지정에 관한 의견(경범죄처벌법)

-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건물주가 원할 경우 건물 전체를 비흡연구역으로 선포하는 완전 금연건물 지정방안을 검토중임. 현행법에 사무용 건물은 900평, 복합건물은 600평 이상일 경우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금연건물 지정대상 면적을 줄여 금연구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병원의 경우 전 건물이 금연구역이 되어야 하는 데도 법규정에 따라 흡연구역을 두어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는 바, 건물주가 원할 경우 건물을 완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함.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강

화하는 한편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경범죄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함(경향신문, 대한매일, 2001. 02. 04).

◎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관한 의견(상법)

- IMF 체제 3년간의 경험을 통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나 숫자에 치중하는 재무구조 개선만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절대 회복할 수 없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 제도의 도입으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를 위한 상법의 개정과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대주주와 경영진의 독단적인 기업경영과 이사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절대다수의 상장기업에서 사외이사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져 제도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의사결정 들러리로 전락함. 사외이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집중투표제가 98년 말 상법에 도입되었으나, 동시에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삽입됨으로써 집중투표제는 사실상 사문화됨. 증권시장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만드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 바, 이에 다수의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이 절실함(참여연대, 국회의원 34인, 2000. 12. 20).

◎ 납세자소송법(가칭) 제정의견

-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납세자소송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함. 이 법안은 납세자인 △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정행위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은 때에는 손해의 예방이나 손실회복을 위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소송을 통해 손해발생이 사전에 예방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인 납세자에게 이익의 10분의 1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와 함께 제정안은 △납세자의 소송대상을

국가나 지자체의 ▲공금의 지출 및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행위, ▲계약의 체결, 이행, ▲채무 등 기타 의무의 부담 및 공금의 부과, 징수를 태만히 하는 행위, ▲재산관리 태만 행위 등으로 하고, △청구의 형식은 ▲위법행위금지 또는 배제, ▲손해의 배상이나 반환, ▲행정행위의 취소나 무효확인 등의 형식으로 명문화하고 있음(민주당 신기남 의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여야의원 25명, 한겨레신문, 2001. 3. 2).

◎ 돈세탁방지에 관한 의견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과 탈세가 조사 및 처벌대상 범죄로 포함된 내용의 돈세탁방지 관련 2개의 법안(‘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 2001년 3월 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 이로써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에 대해서도 자금추적을 벌여 몰수를 단행하고, 세탁에 관여한 공모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으며, 부정환급을 통하여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경우도 자금을 추적해 추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게 되었음. 이 두 가지 법률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과 조직범죄, 밀수, 해외재산도피, 뇌물, 거액 경제사범 등 35종의 중대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자금세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금융기관 종사자 및 환전 영업자가 범죄수익 등 불법자금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특정범죄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등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한겨레신문, 2001. 3. 9).

◎ 민간교도소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가칭) 제정의견

- 법무부는 2000년 11월 ‘민간교도소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가칭)’을 제정, 공포하여 2001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교도소 운영에

참가할 민간인들과의 위탁 조건 등을 명시한 시행규칙과 표준계약서 작성에 착수함. 우선 300억~7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교도소 설치비는 참여자가 제공한 뒤 국가가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운영비는 국가가 일정액을 지급한 뒤 민간인이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을 내는 방안을 각각 채택하기로 하고, 교도소를 설치하는데 큰 돈이 들고 교도소를 운영하면서 자체 수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참여업체의 자격 요건을 비영리재단, 영리재단, 사단법인 등 모든 법인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지금까지 민간교도소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추진중이거나 의사를 타진해온 단체 및 기업은 7~8개 정도이며, 종교단체 중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조계종 총무원, 천주교계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체중에서는 경비기술과 인력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설 경비용역업체 중 S사, J사 등 2~3곳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이밖에 육군교도소 운영 경험이 있는 군인공제회와 경찰공제회 등에서도 나름대로 단체의 성격을 내세우며 참여 의사를 밝히고 운영 조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시설건축과 직원선발 등 준비작업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실제 민영교도소의 발족은 2003년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한겨레신문, 2001. 02. 25).

◎ 민사소송규칙·가사소송규칙 개정안

- 대법원은 사건 관할 기준 내용을 골자로 ‘민사및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함. 이에 따르면 민사 1심 단독 사건을 소송가액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되며, 단독 사건중 소송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항소심을 지방법원 항소부가 아닌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함(한겨레신문, 경향신문, 2001. 2. 28).

◎ 민사조정법 개정안

- 민사조정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사조정기관의 범위를 확장하고 명예조정위원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민사조정법 개정안은 △ 소 제기 전후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도 조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범위를 확대하고 △ 조정위원의 임기를 탄력적

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연수원생이나 명예조정위원에 의한 조정 근거 마련 △ 당사자의 실비부담에 의한 조정위원수당의 지급근거 기준을 마련함(법무부 입법예고안, 2000. 11. 15).

◎ 법원조직법 개정의견

-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항소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바,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편의’보다는 ‘공정’한 재판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비교적 작은 규모의 동일한 지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면 항소하는 당사자로서는 재판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지원에 항소부가 설치될 경우 항소심 법관들은 경력이 일천한 법관으로 충원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는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지역 특성상 지원에 항소부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를 대법원규칙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에 규정을 두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임(대한변협 의견서, 2000. 12. 28 ; 법률신문 2001. 1. 1).

◎ 변호인접견 시 휴대폰 휴대 금지에 관한 의견(행형법)

- 대검찰청은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변호인 접견 때 휴대폰을 들여올 수 없도록 행형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일부 사건의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수감자가 변호인의 휴대폰으로 외부와 통화하며 사건의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위법 행위가 적발되고 있고, 관련 규정상 구속피의자, 피고인 등은 외부와의 통화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변호인과 접견할 때는 교도관 등 관계자들의 입회가 금지되어 있어 수감자들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법무부에서 서울구치소 등 전국 구치소·교도소 정문 등에 ‘휴대폰을 맡기고 들어갈 것’을 알리는 문구를 게시했으나, 변호인 등에게서는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한겨레신문, 2001. 2. 19).

◎ 부동산경매사 도입관련 입법의견

<찬성론>

부동산 경매시장은 현재 연간 1백50조에서 2백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도 이와 관련된 전문자격사가 없기 때문에 법원경매가 일반화·대중화 되지 못하고 있고, 경매 브로커의 횡포가 심하고 상당수 국민들이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해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큰 현실을 감안할 때 부동산경매사라는 공인자격사를 신설, 법원경매나 공매 입찰기일에 매수인을 대리해 입찰신청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부동산경매사가 아닌 사람이 입찰대리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원경매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경매를 둘러싼 부조리 예방에도 상당한 기여토록 함(이창석 한국부동산학회장·전준우 한국부동산경매연구원장 입법청원서, 법률신문 2001. 2. 22).

<반대론>

부동산경매사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국가 공인자격사제도의 남설(濫設)로서 수요자인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뿐만 아니라 법조주변에 기생하고 있는 경매브로커의 발호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비법률전문가에게 입찰대리를 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개연성이 높음(박경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률신문 2001. 2. 22).

◎ 부패방지법(가칭) 제정의견

- 부패방지법(가칭)이 부패방지의 종합적 대책을 성문화한 통합법의 체계를 취하고 있는 반면, 반부패기본법은 기존 법규의 존치를 전체로 하여 기본적인 조항만을 나열한 기본법 형식임.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고위직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반부패특별위원회에 특별검사 발의권을 부여해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직 사건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금품·향응·선물 금지 및 처리절차, 업무의 위업·소득제한,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로부터 제척 등 세세한 공직자 윤리관련 규정 및 처벌 규정을 법으로 명시해야 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및 범위를 4급 이상(특정

직 5급 이상),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확대해야 함. 반부패특별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하고 상임위원 15명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4인, 시민단체가 3인 추천하도록 해야 함. ‘공공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에 지나치게 많은 예외조항을 두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사 및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엄격히 한정해야 함. 반부패특별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여 비리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복 신고에 대해 위원회가 독자적인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유관기관에 이첩만 한다면 제보자는 구태여 위원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음. 내부고발의 성격상 입증책임은 내부고발자의 소속기관에 두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등의 유보적 표현을 삭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도 반드시 두어야 함. 부패에 의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보상이 임의적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됨. 반부패기본법은 보상을 임의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인센티브를 확실히 보장해야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음. 돈세탁행위자체를 불법화함으로써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세탁, 횡령, 배임등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포함하는 모든 음성 자금의 세탁행위를 규제해야 하고,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함(3대 개혁입법처리촉구시민사회단체 성명서, 2001. 1. 9).

◎ 사법시험법 제정안

- 법사위원회의 최종수정을 거쳐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시험법안의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헌법·민법 등 제1차·2차 시험 필수과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1차시험 선택과목은 시행령으로 규정(9조)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12명을 13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법조인 및 비법조인 각 1명씩 2명의 부위원장직을 신설(14조)함에 따라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차관·판사 2명·검사 1명·변호사 2명·법학교수 3명·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1명·법조인과 법학교수가 아닌 자 1명 등 법조인과 비법조인을 각

각 6명씩 같은 수로 구성하게 됨. ②선발인원은 현행 정원제로 유지하되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합격자의 수는 법무부장관이 정함. ③응시자격 제한과 관련해서는 한때 자격을 법학 전공자로 제한할 것을 검토했지만 국가고시 응시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한다는 취지에 따라 소속 대학과 학과에 관계없이 법학과목의 일정 학점(35학점)을 얻으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함. ④법학과목 이수는 일반 4년제 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는 물론 사내대학과 사이버대학,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고시학원에 이르기까지 법률로 정한 평생교육시설이면 모두 인정됨. ⑤1차시험은 현행처럼 헌법, 민법, 형법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을 치르며 객관식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을 혼용할 수 있게 하고 논술형인 2차시험은 현행과 같이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등 7과목으로 정함. ⑥1차시험 과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은 유형별 선택과목으로 내달중 시행령으로 정하며 사회과학과 어학 등 비법률 과목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과목수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⑦3차 면접시험 불합격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1차시험을 면제받았으나 앞으로는 1차 또는 2차시험 중 면제 대상을 본인이 선택하도록 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는 1,2차시험이 모두 면제됨. ⑧현재 4차례만 응시를 허용하는 응시회수 제한은 폐지함으로써 위헌시비는 일단락됨

- 개정법안은 대부분 2002년부터 시행되지만 응시자격제한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2006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이 같은 사법시험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반하여 법조인 수의 대폭적인 증원을 위하여 ‘정원제’ 폐지를 주장해왔던 시민단체 측에서는 ‘사법개혁의 후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음.

: 경향신문, 2001. 2. 27; 한겨레신문, 2001. 2. 28; 법률신문 2001. 3. 5.

◎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의견

-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바, 사형폐지 반대론을 감안하여 법원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에는

복역후 1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석방, 일반, 특별사면, 감형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무기형인 경우 가석방 등의 제한 규정을 보완할 예정임(정대철 민주당의원, 경향신문, 매일경제, 2001. 1. 28; 국민일보, 2001. 2. 16).

◎ 상법개정안

<기업지배구조개선관련>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98년과 99년 두차례에 걸쳐 소수주주권 강화, 사실상 이사에 대한 책임규정 신설, 이사회 내에 위원회제도·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을 했으나 여전히 기업지배구조 관련법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법개정안을 마련함. ①상법개정안은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식교환·이전제도를 신설하고 주식소각제도, 회사설립시 받기인 수에 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의 지원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 등을 신설·보완함. ②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편법적인 신주발행으로 인해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도록 신주를 주주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다만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승소하면 회사에 소송비용 및 기타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금액 가운데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에 대해 구상하도록 함. ③이사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사항에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자산의 차입을 추가함으로써 이사회의 회사업무에 관한 의결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사외이사 등이 회사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사는 이사의 업무집행 실적 등을 3개월에 1회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

써 주주총회에서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④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시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주식을 포괄적으로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 관계를 형성(주식교환)하거나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주식을 포괄적으로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설립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 관계를 형성(주식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⑤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정기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제도를 신설함. ⑥이밖에도 △이사·감사의 비밀유지의무 신설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설립시 1인의 발기인으로도 회사설립 가능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주와 회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바로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법무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2000. 11. 21 ; 법률신문 2000. 11. 23).

◎ 섭외사법관련 입법의견

- 현행 섭외사법은 지난 62년 제정된 이후 급격한 국제사회의 변화 및 국제사법 분야의 눈부신 이론의 발전이 있었음에도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준거법 결정방식과 내용의 불비로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부응치 못하고, 가족법 분야에서는 준거법으로 남편 또는 아버지 단독의 본국법을 규정한 것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의 소지가 있는 바, 국제조류에 맞춰 다음의 내용으로 대폭 개정함.

<주요 개정내용>

◇ 국제재판관할 규정 신설

이번 개정안의 가장 주목받는 규정으로 국제민사소송이 빈번한 현실에서 국제민사사건에 대해 어느나라의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갖는지의 문제인 국제재판관할 부분이 꼽히고 있는 바, 이는 민사소송법 등 국내법에 이를 직접 규정하는 성문법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임. 총칙에서

는 대법원 판례가 취해온 입장을 반영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제2조) 각칙인 채권편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계약 및 근로자계약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특칙을 규정함(제42-43조).

◇ 법의 미비 보완

현행법은 권리능력, 법인 또는 단체, 임의대리, 운송수단, 이동중의 물건, 법률에 의한 채권 이전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많은 법의 미비를 노출시킴. 개정안은 이러한 중요 사항에 대해 연결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의 미비를 보완함(제11, 16, 18, 25, 35, 37, 38, 39, 50, 51조 등). 또한 학설상 논란이 있어 왔던 외국법의 적용문제, 준거법의 지정범위, 내국 강행법규의 적용문제 등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둬으로써 완결된 국제사법 체계를 지향함(제5-7조).

◇ 상거소 개념의 도입

국제적인 조류에 적극 부응, 국제조약 및 다수의 입법례에서 사용하는 상거소를 새로운 연결점으로 도입함. 사람, 친족, 상속분야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종래의 본국법주의를 유지했으나 혼인의 일반적 효력, 부부재산제, 이혼, 혼인중 친자관계, 상속, 유언의 방식 등에 있어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을 본국법과 선택적·보충적으로 적용토록 함(제20-25조, 28조, 32조 2항, 33조 3항).

◇ ‘가장 밀접한 관련’ 원칙 관철

해당 법률관계에 대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해 ‘가장 밀접한 관련’ 원칙을 확립함.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현행과 같이 기계적으로 행위지법에 따르지 않고 해당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함(제41조).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법정채권(法定債權)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 기존의 당사자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원인된 사실의 발생지법보다 우선 적용함으로써 법률관계와 준거법의 실질적 관련성을 담보함(제45-47조).

◇ 남녀평등의 실현

개정시안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맞도록 부부공통의 본국법 등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등 현행법의 조항을 적절히 수정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불식함(시안 20-23조, 28조).

: 법무부 섭외사법개정공청회, 2000. 11. 23 : 법률신문 2000. 11. 27.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특칙>

입법예고된 섭외사법(국제사법)개정안에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특칙을 마련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원칙이 없어 문제가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음. 국제재판 관할에 관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원칙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아직 판례법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 등 내용에 관한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원칙을 성문화하는 것은 깊이 고려해야 함.

- 법원으로 하여금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 확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제5조 외국법의 적용 조항은 원론적으로 타당하나 실무상 법원의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법 적용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음(유영일 특허법원 판사).
- 개정안에 종래의 주소에 대체해 상거소 개념을 도입한 것은 타당하지만 갑작스런 도입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그에 대한 개념 및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의 준거법을 정한 제16조 거래보호 조항의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개정안이 취한 설립준거법주의는 국제거래상 대부분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 해결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본거지법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더 적절함(안춘수 연대 법대교수).
- 전자상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전자계약의 준거법과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손경한 변호사).
- 혼인외의 친자관계에 대해 개정안과 같이 부자관계의 성립을 따로 구별할 실익이 없고 약혼도 혼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내용을 가진 조항을 신설해야 함(이화숙 경원대 법대교수).

: 법무부 섭외사법개정 공청회, 2000. 11. 23.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200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어린이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나 최근 들어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규와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증언 녹취 법정 인정>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가해자와 얼굴을 맞대면서 제2의 충격을 받는바,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녹취한 진술이 증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함(노미덕 광주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

<단서조항 삭제>

법 제8조 4항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살 미만의 여자를 간음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어린이는 성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위력’에 의하지 않고도 추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여야 함.

<신속한 처벌 필요>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신속하게 처벌되어야만 어린이들이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정신적인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처벌을 신속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함.

: 한겨레신문, 2001. 2. 1.

◎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 이행권고 결정제도는 소송물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해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별도의 심리없이 권고내용을 확정판결로 인정하는 제도로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판결로 인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보통 2~3개월씩 걸리던 재판진행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보름만에 해결이 가능하게 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당사자가 일부러 재판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재판진행시 당사자들이 출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됨.

: 법무부 입법예고안, 2000. 11. 15.

◎ 즉결심판제도 폐지에 관한 의견

- 대검찰청은 즉심 제도가 일제식민통치시대의 유산으로서 연간 90만명의 대상자중 93%가 미출석하고 이로 인하여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찰제도 개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벌과금 수준이 경미한 범죄들에 대한 법적 처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법무부와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검찰은 벌과금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판사와 검사, 경찰 등이 한번에 모이는 ‘간이 재판소 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 1회 출석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교통사고나 경범죄 수준의 경미한 사범들을 전담 처리할 ‘간이 재판소’가 신설되고 기존의 ‘즉심 제도’는 폐지될 예정임(한국일보, 2001. 3. 8; 한겨레신문, 2001. 3. 9).

◎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

- 재정경제부는 주주중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했을 경우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주주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주어지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특히, 도입되는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 부실과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모두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제시함. 당초 재계의 반발을 고려, 유가증권신고서와 공개매수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부실 기재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재정경제부가 이번 에 포함시키려는 집단소송 대상행위에는 수시 조회 공시사항에 대한 허위, 부실 공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 행위, 부실회계감사, 투자신탁회사의 편법 계열사 지원 등 지난 2000년에 잇따라 적발된 증시의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모두 포괄한 것임. 이와 함께 총자산 2조원이상인 대형기업의 경우 거래소뿐 아니라 코스닥 등록 법인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

지 않는 방안을 추진중임(한국일보, 2001. 3. 4; 경향신문, 국민일보, 2001. 3. 5).

◎ 출입국관리법 개정의견

- 법무부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와 △병역의무 기피자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국내에 불법 취업시킬 목적으로 외국인을 허위 초청, 보증하거나 비자를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수사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기소중지자에 대한 출국 예정기간을 현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도 국세나 관세처럼 5,0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광역 자치단체장 요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나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을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자’로 제한하였고, △병역기피를 위하여 도주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가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출금 조항이 신설하였으며, 관행적으로 적용해 오던 △2억원 이상 국세포탈 혐의자, 부도, 파산 중이면서 금융기관에 50억원 이상 손실을 초래한 기업체 대표 등에 대한 출금 조치도 명문화하고, 이밖에 △외국인들의 난민 인정 신청기간을 현행 ‘입국 후 60일내’에서 ‘1년 내’로 연장하고 있음. 법무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200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임(내외경제, 한국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2001. 2. 23).

◎ 행정소송법 개정의견

- 우리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의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한 조항의 해석에 의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결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행정소송의 특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송상 화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무상 화해조서 작성에 의한 소송상 화해를 자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의 불완전성 및 이 문제에 관해 대법원 또는 법원행정처의 명시적인 견해표명이 없기 때문임. 소송상 화해의 활성화

화를 위해서는 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조용호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행정소송에서의 재판상 화해에 대하여', 행정법원 소송실무연구회, 법률신문 2000. 12. 21).

◎ 회사정리법 개정의견

-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사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회사정리 절차개시 신청과 동시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사전제출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회사정리법' 개정안은 제1회 관계인 집회 이전까지 사전정리계획안에 동의하는 채권이 3분의 2를 넘으면 법정관리인은 정리계획안을 2개월 안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내외경제, 2001. 3. 9).

<참고자료>

국회위원회별 법률안 처리현황

(2000.11.11 ~ 2001.3.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01227 2001년도예산안

001201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건설교통위원회

001215 한국도로공사법중개정법률안

001215 한국수자원공사법중개정법률안

001220 교통체계효율화법중개정법률안

0012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001215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안

001215 철도소운송업법중개정법률안

00122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001215 하천법중개정법률안

001215 건설기계관리법중개정법률안

010308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0012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000308 부동산투자회사법안

001220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

001220 유료도로법개정법률안

001215 지하수법중개정법률안

001215 건축법중개정법률안

001215 건축법중개정법률안(대안)

001215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001220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001215 한국과학재단법중개정법률안
- 0012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00121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 001215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중개정법률안
- 001215 원자력법중개정법률안
- 001215 과학기술기본법안
- 001215 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중개정법률안
- 001215 광주과학기술원법중개정법률안
- 001215 원자력손해배상법중개정법률안
- 0012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001220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
- 001215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 001215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중개정법률안
- 00121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 0012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001215 정보결차해소에관한특별법안
- 0012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0012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01022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010228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중개정 법률안
- 010308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 010228 과학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 010228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001221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00122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010308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0012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 010228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001208 국방과학연구소법중개정법률안
- 001208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001208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 001223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 001208 병역법중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회

- 010228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001227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010228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 001222 인삼사업법중개정법률안
- 001221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
- 001221 한국해운조합법중개정법률안
- 001221 어항법중개정법률안
- 001221 향로표지법중개정법률안
- 001220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001221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001220 종자산업법중개정법률안
- 001221 항만법중개정법률안
- 001220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001220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 001222 수산물품질관리법안

- 010228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001221 농작물 재해보험법안
- 010228 사료관리법 개정 법률안
- 001221 환경농업 육성법 중 개정 법률안
- 001221 수산업 협동조합법 중 개정 법률안
- 010228 농어업 재해 대책법 중 개정 법률안
- 001221 농어업 인부 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001221 산림법 중 개정 법률안
- 010228 수산물 품질관리법 중 개정 법률안
- 010308 농어업 재해 대책법 중 개정 법률안 (대안)

문화관광위원회

- 010228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 010228 제22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지 원법안
- 010228 문화재 보호법 중 개정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001208 호적법 중 개정 법률안
- 00120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 001208 국가배상법 중 개정 법률안
- 001208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 법률안
- 001208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중 개정 법률안
- 010308 회사정리법 중 개정 법률안
- 00120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 010109 법원조직법 중 개정 법률안
- 010109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 010109 소액사건 심판법 중 개정 법률안
- 010109 민사조정법 중 개정 법률안
- 010308 섭외사법 개정 법률안
- 010228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 법률안

010228 호적법중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001208 제8회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지원법안

001208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001208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

산업자원위원회

001208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001208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00120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001208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001208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

001208 품질경영촉진법개정법률안

001208 대외무역법개정법률안

001208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안

010109 산업디자인진흥법중개정법률안

010109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010109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

010109 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안

010109 특허법중개정법률안

010109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010109 의장법중개정법률안

010109 상표법중개정법률안

010109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

01010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010109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001208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00120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010109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안

010228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

010308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001221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001221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

001221 교육세법중개정법률안

001221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001221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001221 전화세법폐지법률

001221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001221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001221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

001221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00122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001221 관세법중개정법률안

001221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001222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001221 신용보증기금법중개정법률안

00122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개정법률안

00122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010308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

010228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010228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

010228 증권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001221 국민경제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

010228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안

001202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

010228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010228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개정법률안

- 010228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
- 01022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001221 조세특례법중개정법률안
- 001221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 001222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 010228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회

- 001215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개정법률안
- 00121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001215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안
- 00121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001215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001215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중개정법률안
- 010228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00121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00121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001215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개정법률안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001208 외무공무원법개정법률안

행정자치위원회

- 001201 경찰법중개정법률안
- 001201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 001227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001215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001215 상훈법중개정법률안
- 001215 오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 010308 청원경찰법중개정법률안
- 001215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001220 소방법중개정법률안
- 001220 사격및사격장단속법중개정법률안
- 001220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중개정법률안
- 001215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안
- 001222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001215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001221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
- 010308 경비업법개정법률안
- 001220 온천법중개정법률안
- 001223 지정법개정법률안
- 001222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001223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010228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회

- 001215 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안
- 001215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001215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010228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010308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010228 기능장려법중개정법률안
- 001215 임금채권보장법중개정법률안
- 01022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중개정법률안
- 010228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중개정법률안
- 0102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 010228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대안)
- 010228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010228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